

제1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일시 : 2014. 11. 1.(토) 13:30 - 20: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교육공학실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후원 :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 행사 프로그램 ● ●

시간	세 부 내 용
13:30-14:00	○ 식전 등록 및 입장
1부 : 개회식 14:00-14:40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조진우(학회 사무국장, 도로교통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사회자 ○ 국민의례다같이 ○ 개회인사 및 내빈소개박인현 회장(대구교대) <p style="text-align: center;">김지경 소장(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황철규 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p>[기조발제]헌법교육의 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표 : 허종렬 교수(학회 고문, 서울교대)</p>
14:40-15:00	휴 식
2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15:00-17:00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 박용조(학회 부회장, 진주교대 교수)</p> <p>[주제 1]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발표 : 박인현(학회 회장, 대구교대 교수) 지정토론 : 성위석(학회 부회장, 경북대 교수)</p> <p>[주제 2]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헌법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 발표 : 박상준(전주교대 교수) 지정토론 : 홍석노(경기도교육연구원, 법학 박사)</p> <p>[주제 3]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분석 발표 : 이지혜(서울 한서초 교사, 교육학 박사) 지정토론 : 이수경(서울 동작고 교사)</p> <p>[주제 4]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기반학습 발표 : 박형근(서울 파일초 교사) 지정토론 : 강은경(수원 태장초 교사)</p>
3부: 연구윤리 특강, 정기총회 및 폐회식 17:00-19:00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조진우(학회 사무국장, 도로교통연구원)</p> <p>[연구윤리특강]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윤리와 학문 탐구발표 : 이종근(학회 연구윤리위원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정기총회]사회자</p> <p>[폐회선언]박인현(학회 회장)</p> <p>* 만찬의 시간(두부촌)다같이</p>

● ● 목 차 ● ●

< 인사 말씀 >

인사 말씀박인현(V)

< 기조 발제 >

[기조 발제] 헌법교육의 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허종렬(1)

< 주제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1]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박인현(23)

[주제발표 2]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
.....박상준(69)

[주제발표 3]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분석
.....이지혜(91)

[주제발표 4]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기반학습
.....박형근(115)

< 연구 윤리 특강 >

[연구 윤리 특강]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윤리와 학문 탐구
.....이종근(149)

인사 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19차 학술 발표회입니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뜻 깊은 학술행사로 김지경 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학교 및 군대 내 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과 타인 배려, 기초 질서와 법 준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소양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 내용과 방법을 재검토하고, 헌법적 정신과 가치를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 신항균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학회의 활동에 대해 평소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황철규 국장님과 학술대회 때마다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오주연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해주신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김동규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과 학술 및 연구이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박인현**

•• 기초 발제 ••

**헌법교육의 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조 발제]

헌법교육의 의미, 문제점과 개선 방향*

허 중 렬(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학회 고문)

- I. 헌법교육의 의미, 필요성과 가능성
 - II.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 III. 맺음말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의 필요성
- * 참고문헌

I. 헌법교육의 의미, 필요성과 가능성

1. 헌법교육의 의미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수단으로서의 권력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교육은 넓게 볼 때, 당연히 법교육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교육 역시 법학, 특히 헌법학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비판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교육 역시 헌법전문가를 길러내는 법학교육의 일부인 것은 아니며,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편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 본 기조발제문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2009년에 제출한 허중렬 외(2009b),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pp. 3-13,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부분을 발췌하고 여기에 최근의 관련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것임.

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적 소양(Legal Literacy), 특히 헌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한다(허종렬, 2009a :7-14).

2. 헌법교육과 구별해야 할 개념

가. 인권교육과의 구별

헌법교육은 특히 인권교육과 많은 부분 겹친다. 그것은 헌법이 바로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교육을 하면 그것은 동시에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된다. 양자의 관계는 서로 포섭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양자의 취지는 서로 다른 면이 있다. 헌법교육은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같이 다룬다.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그 제도에의 참여를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권 자체를 중시하며, 헌법상의 인권은 물론 그 밖의 국내외적 인권규범 모두에 관심을 갖는다.

종래 우리나라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준별하여 양자가 목적으로 달리 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법’ 또는 ‘인권’만의 교육보다는 ‘법과 인권’을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헌법교육은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점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국의 예로써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초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 책자를 보면 이러한 접근 방법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을 함에 있어서 국제인권장전만이 아니라 헌법상의 관련 규정도 같이 교육하고 있다(허종렬, 2008 : 26).

나. 정치교육과의 구별

헌법교육은 흔히 정치교육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 헌법은 그 자체로서 특히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인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의 내용은 정치권력, 정치과정, 정치제도 등이다. 정치교육도 규범교육과 가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규범 특히 헌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실증과학인 정치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

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실증과학인 정치학이 아니라 규범과학인 법학, 특히 헌법학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법학에서 강조하는 법률관계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방법에 입각해 있다(허종렬, 2009a, 8-9).

3. 헌법교육의 필요성

가. 법교육 일반에 인정되는 필요성

헌법교육도 법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법교육의 필요성 관점에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자연히 도출된다. 따라서 헌법교육도 법치주의의 요청,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헌법 자체에 대해서 이를 폄하하는 듯한 정치적 상황이 야기된 점도 있으므로 헌법에 대한 의식의 개선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교육에 특별히 인정되는 필요성

미국 워싱턴주의 법교육과정은 그 목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미국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에 익숙하도록 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허종렬, 1992: 367).

Mcbee, Robin Haskeli(1994 : 3)은 법교육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네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 법률과 헌법의 지식을 넓히고 그것과의 개인적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들고, 수업에서 Virginia Constitution과 같은 원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인권 보장적 관점

인권보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헌법은 자신의 인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

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리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란 자신의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사회적 산물이다.

요컨대, 헌법을 통한 인권교육은 나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이것이 타인의 인권에 대하여 존중할 자신의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양을 접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는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의존한다(Jerrold R. Coombs, etc., 1990 : 78).

2) 민주시민교육적 관점

민주 시민 교육적 관점 역시 헌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교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미국도 그 나라의 민주적 신념은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적법 절차와 평등 보장(due Process of law and equal protection),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와 같은 실천적 사항 외에 정의, 평등, 자유, 책임성, 다양성, 기본적 인권의 존중,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June Tyler & David L.Manning, 1981 : 5).

요컨대, 법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헌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입헌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법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법교육의 본질(ABA, 1995)¹⁾은 법교육의 실제에서 본질적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 권력, 평등, 자유, 본질적 원리로서 시민과 사회, 정부 역할 사이의 관계, 민주적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 본질적 기능으로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참여 능력, 본질적 태도와 신념 가치로서 입헌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법의 지배,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은 정부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줄 아는 정신이다.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는 구체적 법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요소로 한다. 법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 정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위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법에 관한 논리와 법에서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 사법적 결정에서의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법률 혹은 판결 자체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바로 도덕적 문제에 관한 판단능력과 직결된다(Jerrold R. Coombs, etc., 1990 : 78).

3) 법치주의적 관점

법치주의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은 일반 법교육에 비하여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부분이다.

바로 헌법 자체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도출된다(Charles J. White, 1975 : 30).

완전한 시민정신이란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는 법적 원리를 알고 그것을 고려하며, 그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의도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의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시민정신을 획득하게 하는 데 근본적이다. 즉 완전한 시민정신은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Jerrold R. Coombsetc., 1990 : 79).

1)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emaker.

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4.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가능성

미국의 Center for Civic Education(CCE)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만 아니라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과정에서의 헌법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체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혹은 3, 4학년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http://www.civiced.org/index.php?page=elementary_school).

The Preamble is made up of many words that might be hard to understand when you first read them. But if you study them, you will find they are not that difficult

미국 위스콘신 주 법교육 과정도 중등단계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아가 유치원 단계에서의 교육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권위’와 ‘권리’에 관해서는 전 과정에서, ‘헌법적 기초’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헌법과 연방 및 주법간의 관계와 비교에 대해서는 5학년부터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허종렬, 1992 : 37).

미국의 각종 문헌들은 헌법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하여 기피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늘 같은 생각이다. 마치 브루너와 삐아제의 이론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느낌이다.

II.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헌법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개선방안 역시 같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 측면에서 동시에 언급하기로 한다.

1. 교육환경과 역사적 측면

학교 헌법교육의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헌법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헌법 교육적 기능도 약하다. 체헌절이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약하다. 이런 날을 미국처럼 대대적인 헌법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역할도 부족하다. 다만 요즘 종종 헌법재판의 판례가 소개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때 헌법과피의 역사를 겪은 바 있다. 이승만 정부 하의 사사오입 개헌, 5.16, 삼선개헌, 유신헌법, 5.18 사태 등이 그것들이다.

몇 년 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이하 '교과서'라 한다)를 모두 분석·검토하여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헌재가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헌재의 권한인 동시에 책무라 할 것이다. 헌재가 제시한 의견을 일별건대, 일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교과서에서 민법이나 형법 등에 비하여 헌법을 소홀히 다루는 점, 헌법재판을 설명하면서 이를 일반 법원 조직의 일부로 혼동한 점, 헌법재판 제도를 소개하면서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빠뜨린 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성문헌법과 기본권 보장 문제를 간과한 점, 법교육을 한다면서 권리보다 의무 본위의 설명을 한 점, 준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일화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구에 의존한 점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2. 교육내용 측면

가. 내용의 왜곡과 편중성 등

1) 법치주의 교육의 왜곡과 미흡

위의 헌법재판소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오용하여 법치주의를 왜곡한 것을 지적한 것처럼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다.

교육에 대한 외부 세력의 정치적 개입의 결과이지만 사회과 교과서의 법 분야 내용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 데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수진에 법 전문가가 부족하며, 교과서의 집필진 구성을 교과교육학 전공자들의 참여에 주로 의존해온 점도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현재가 지적한 교과서상의 문제점들은 모두 최근 헌법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학 전공자와 법조계 사람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법치주의 교육은 오히려 강화될 필요도 있다.

2) 인권교육의 일관성 결여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 또는 부정되기도 하였다. 과거 38년동안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살아왔으며 그 기간동안 인권교육은 사실상 부정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문민화 되고, 인권 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교육은 강화되었다. 그 최근의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허종렬 외(2004)의 우리들의 인권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13가지 인권을 다루고 있다.²⁾ 허종렬 외 (2008), 함께하는 법이야기도 인권 내용에 유의하였다.³⁾

2) 양성평등(성차별, 인종과 민족 차별, 장애인 차별의 문제점), 선거권과 피선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네티즌의 올바른 태도, 환경권과 개발권의 조화, 노약자의 권리와 사회보장제도, 지적재산권,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대량학살과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가 그것들이다.

3) 법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안전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친구를 놀리는 것도 폭력이 되나요, 상처 없이 자라고 싶어요,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도 소비자예요, 법은 어디에서 다루나요, 우리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치 법정을 열어요. 등이 그것들이다.

Reiner(1986)는 미국에서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법교육 교재에 들어갈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 인권과 직결된 것들이다.

Rights : the right to keep and use to protect the country, privacy to have life, liberty, property,

liberty : religion, speech or the press, assemble peacefully

justice : due process of law, search & seizure(refuse to testify against themselves)

equality : equal protection

인권교육은 이 외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인권교육은 내용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인권이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의 성격에서 표방한 인권의식의 제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 설정에서 보면 이점이 보이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어 있다.

헌법 관련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같은 지적으로는 박인현, 1995 : 116 참조).

또한 내용 선정, 조직과 계열에서 6학년에서만 취급되는 것은 문제이다.

삼화처리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의 인권소양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집필진 구성에서 전공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 영역별로 전공자들이 공모에 의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인권 관련 교사 연수가 절실하다. 교사용 지도자료 및 참고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권의식과 헌법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교육과정과 방법에 반영하여야 한다(허종렬 외 2002, 제7차 교육과정

1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84-286).

인권교육이 특정교과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인지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교와 교실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교권과의 충돌을 의식하여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교육의 주체, 내용, 대상의 확대와 참여 지향적 모형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설규주, 2005 : 44-52).

나. 교육과정의 타당성 미흡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교육 내용들이 6학년 2학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학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박인현, 1995, : 117).⁴⁾

헌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표를 통하여 과거 사회과 교육과정을 모두 검토하였다.

<표 1> 구 사회과 교육과정상의 헌법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차 교과과정 사회생활과 (단기 4288)			책임과 공역	자 유 와 협동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주의 국민의 본분(권리, 의무)
2차 교육과정, 사회, 1963	교 통 규칙				근로와 강제 노동과의 차 이점	민주주의와 정치(삼권분 립), 우리의 할 일(국민의 본분에 대한 이해와 그것 의 올바른 행사)
3차 교육과정, 사회, 1973						민주대한의 발달 (4.19의거와 5.16 혁명),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 정치(10월유신과 민주헌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민주적인 사회생활(법과 질서, 공익우선, 국민으

4)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 관련 내용의 역사적 개관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허종렬 외, 2009a 참조

						로서의 책임.)
4차 교육과정, 저학년은 도덕과의 통합 운영, 사회, 1981	학생 생활 규칙	공동 생활 규칙	고장 생활에서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자유	사회 규범과 준법 정신	국가와 국민 생활(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복리증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의 의한 통치와 준법 정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우리나라 헌법의 특징,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5차 교육과정, 사회, 바른생활 1987			고장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	사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	4차와 완전 동일함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민주정치의 특색 나라에 따라 다른 민주정치제도 국민의 정치 참여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의 특색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리나라의 통치기구
6차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생활			공동 생활을 위한 의사결정, 경쟁과 갈등, 협력	시도 공동 생활을 위한 규범 준수와 역할 수행	의사결정과 정치참여, 법의 제정과 준법,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정치와 국민생활과의 관계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색(정치제도의 발전), 정치의 안정과 민주화, 개인과 국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해결, 민주주의 근본 정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국민의 대표와 주민의 뜻 나라 일을 맡은 기관들(삼권 분립, 국회, 대통령과 정부,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
7차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생활, 1997				주민자치(선거)와 지역 문제의 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선거, 유권자,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신문에 나타난 판례와 법원이 하는 일, 국

1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결	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시민의 권리와 준법 정신(인권이 침해된 사례 와 인권의 중요성, 국민 의 기본권의 내용, 국방 의무의 중요성, 국민의 기본의무)
2007	교육과정, 사회, 슬기로운 생활, 2007			주 민 자 치	우리나라 민주정치로 위 의 7차와 비슷함.

현행 2009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헌법 관련 부분
을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허종렬 외, 2013).

〈표 2〉 2009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헌법 관련 주제

학 년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역사 영역
초등학교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달라지는 생활 모습 ◦촌락형성과 주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과 소통하기 ◦우리 지역, 다른 지역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지역 사회의 발전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 ◦다양한 삶의 모습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초등학교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기 좋은 우리 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 경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 경과 생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 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 의 우리

3. 교재 개발 측면

가. 교과서 서술상의 문제

그동안 교과서 내용 서술 방법이 개념과 지식, 여러 가지 정보의 나열 위주의 서술에 치우쳐 있었다. 이것을 사례(판례 포함) 실천 중심의 내용을 소개하고, 지식보다 가치와 태도 및 참여, 문제해결 능력 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허종렬 외, 2013).

나. 헌법교재 개발 미흡

헌법교육과 관련된 교재 개발이 미흡하다. 이것은 비단 법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부교재의 발행이 미흡하다. 최근에 시중에 나오거나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헌법 관련 책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허종렬 외(2002), 우리들의 인권이야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향숙·김재홍(2004),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 을파소

허종렬 외(2008), 함께하는 법이야기, 법무부.

법무부(2009),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헌법교육시리즈 1.

허종렬 외(2011), 바로미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재판 이야기 I, II.

허종렬 외(2013), 바로미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재판 이야기 III, IV.

법무부(2013). 헌법아 놀자 I, II. 5)

4. 교육행사 측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년의 관련 국경일이나 절기를 이용하여 헌법 관련 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미국이 특히 그런 면에서 강하다.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기념일이 제법 된다.

5) 법무부는 NHN과 헌법교육 게임을 공동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들린다.

1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헌절, 광복절, 4.19, 4.20 장애인의 날, 5월 1일 법의 날, 어린이주간(5.1-7), 6.3 세계출판의 날, 6.5 환경의 날, 7월 17일 제헌절,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9월 15일 세계평화의 날, 10월 31일 유니세프의 아동의 날, 10월 20일 문화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 11월 9일 파시즘과 유대주의 반대의 날, 12월 3일 소비자의 날, 12월 10일 세계 인권 기념일 등이 모두 그 취지를 살리면 헌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날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날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개발할 부분이다.

5. 학습의 장 측면

헌법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관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현장에서 직접 헌법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물론 각 기관들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두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형식적인 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주최하고, 한국 법문화 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어린이 헌법캠프(2009.7.20-22)는 주목할 만하다. 올해 처음 개설하였는데, 대전의 솔로몬 Law Park에서 열려 현장감을 더해주었다. 내용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리 5가지,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파워헌법 맨, 나는 야 법짱, 변호사님 질문 있어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학습방법 측면

법교육의 방법이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사례교육에 소홀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이다.(박인현, 1995 : 120). 강의나 설명 위주의 방법보다 사례와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한 토론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념과 지식의 암기보다 생각을 나누는 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활용하여야 한다(허종렬 외, 2013). 연구소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구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허종렬 a, 2014).

〈표 3〉 분류 기준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분류 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기법
독자적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법교육에 고유한 방법	- 사례연구
법교육에서 독자적 방법 혹은 수업과정 중의 기법으로 혼용되는 일반적 방법들	- 지역기반학습 : 자원인사활용학습과 현장 견학(국회, 법원, 정부 등) -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 모의재판, 모의입법, 모의청문회, 모의 투표, 자치법정 - 비판적 사고 학습 : 토의(배심토의학습)와 토론학습(쟁점 중심 토론학습) - 의사결정학습 - 문제해결학습
법교육에 효과적인 수업과정 중의 일반적인 기법들	- 교재 활용 기법 : 문학이나 드라마, 기타 시청각 교재 활용기법 - 참여 기법 : 게임, 중재와 협상 - 토의 기법 : 브레인스토밍, 사례 들어 말하기 기법, 생각 공유하기 - 집단 구성 기법 : 소집단활동 특히 전문가집단 활동 기법

미국이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위의 CCE 등에서 제시한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구체적 헌법교육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다. 이것들은 모두 초등학교에서도 헌법교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실감이 나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Center for Civic Education이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 전문을 공부하는 학습모형을 개발한 것을 소개한다. “We the People: The Citizen and the Constitut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것이다.⁶⁾

6) The program is endorsed by the Kentucky Supreme Court and has been in operation since 1993. Chief Justice Joseph E. Lambert and AOC Director Cicely Jaracz Lambert have been unwavering in their support of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s programs, evidenced by their willingness to commit AOC resources to a variety of education projects(<http://courts.ky.gov/lre/wtp.htm>).

1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1) Grade K

"Orb & Effy Learn About Authority"

(2) Grades 1 - 2

"Learning About Authority"

(3) Grades 3 - 4

"What Basic Ideas Are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4) Grades 5 - 6

"What Basic Ideas About Government Are Includ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5) Upper Elementary Grades

a. "What Is a Republican Government?"

Student Lesson [Teacher's version]

b. "What Responsibilities Accompany Our Rights?"

Student Lesson [Teacher's version]

7. 교원 양성 및 연수 측면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또 주목하는 것은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에 헌법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 초등교사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 대학들에서 정식의 강좌에 헌법이 포함된 것을 찾기 어렵다. 법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교대가 유일하며, 9개 대학이 학부 1학년에 법학 또는 법률 여행 등의 이름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법교육 과목 자체는 없다. 아예 대학 내에 법 관련 과목이 전무한

대학도 4개 대학이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법교육을 직접 개설한 대학은 한두 개에 불과하다. 나아가 헌법 과목을 개설한 학부는 전혀 없으며, 서울교대의 대학원에서 헌법과 국제법 존중주의가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허종렬, 2009 : 24).

그러나 일본은 각 교육대학이 헌법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 우리에게 시사를 준다고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교육을 다루는 연수 기회 자체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서울교대 법교육 연구소와 대전 로파크에서 하는 것이 전부 일뿐 아니라, 그 연수프로그램 역시 아직 헌법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속히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Ⅲ. 맺음말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의 필요성

필자의 이 기초발제가 오늘 초등 헌법교육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으로 한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최근 헌법교육은 범 국가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헌법교육’을 검색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와 영역들에서 헌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교육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라.’ ‘보통 교육에서 이제 헌법을 가르쳐야 할 때’라는 주장은 물론 ‘부끄러운 제헌절, 헌법 교육부터 다시 시키자’, ‘개헌논의와 헌법교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헌법교육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헌법교육 강화를 법무부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여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부 관계자등을 참여시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헌법교재 간행과 보급은 물론 헌법 교재 게임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2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역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지난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헌법 가치 수호를 통한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주제로 ‘법’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 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헌법교육’을 설정하고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하여 이미 2012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 공무원 헌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직무연수’를 시작하였으며, ‘어린이 헌법교실’을 열어 현장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여론과 각 부처 및 사법부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헌법강화추진단’이 범국가적인 협의체로 더욱 확대 개편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부분은 입헌주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제헌절은 꼭 부활시켜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제정일인 7월 17일을 기하여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사례를 주제로 하는 학생 토론 대회를 TV를 통해 현장 중계하는 행사를 갖기도 한다. 가장 대중적이면서 효과적인 헌법교육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박상준 (2009),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박인현(1995), 초등학교 학생들의 법 의식 교육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교
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연구, 제7집, 89-126.
- 설규주(2005),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제
44권 1호(2005.3), 27-56.
- 이대성(2009),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법교육의 실천과제, 사회과교육
연구, 제16권 3호, 63-75.
- 이향숙(2004). 내가 처음 만난 대한민국 헌법. 서울: 을파소.
- 허종렬(1992), 법교육의 목적과 원리에 관한 미국에서의 이론과 사례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제16집, 365-378.
- 허종렬 외(2002).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 연구, 국가인
권위원회.
- 허종렬 외(2004). 우리들의 인권이야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허종렬 외(2007). 초등학교 법교육의 방법과 실제-초등학교 법교육의 성격과
내용, 방법.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육연수원.
- 허종렬 외(2008). 함께하는 법이야기, 법무부.
- 허종렬 외(2008).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한국초등교육, 제18권
2호, 서울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17-34.
- 허종렬 외(2009a).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구소
등, 법무부, 7-25.
- 허종렬 외(2009b).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교재개발 방안 연
구.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 허종렬·박상준·이지혜·박형근·이선영(2013). ‘헌법의 정신과 가치’ 반영한 초등
사회 교과서의 개발(법무부 연구보고서).
- 허종렬(2014a). “법교육으로의 초대.” 서울교대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제15차
법무부 법교육직무연수자료집. pp. 9-28.
- 허종렬(2014b). 초등학교 법교육의 필요성, 내용과 방법-초등학교 교육과정

2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에서의 헌법 관련 내용 포함-, 헌법재판연구원.

ABA(1995),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ymaker.*

Charles J. White,(1975),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Chicago : ABA/YEFC,

Jerrold R. Coombs(1990), etc., *Ends in View -An Analysis of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Center for Education, Law & Society Simon Fraser University : 78.

June Tyler & David L.Manning(1981),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The Connecticut State Board of Education.

Mcbee, Robin Haskell(1994), *Living the law by Learning the Law*, ERIC.

Reiner, Fran, etc.,(1986), *The Bill of rights : A Law-related Curriculum for Grades 4-6 -Student Materials and Teacher's Guide.*

<http://www.moj.go.kr/>

<http://kids.ccourt.go.kr/>

<http://www.lawedu.go.kr/>

<http://www.nec.go.kr/>

<http://www.ktrf.re.kr/index.jsp>

<http://oneclick.moleg.go.kr/CSP/common/Main.laf>

http://www.teach-nology.com/worksheets/soc_studies/constit/(미국사회과학습지)

http://www.civiced.org/index.php?page=elementary_school.

<http://courts.ky.gov/lre/wtp.htm>

•• 주제 발표 1 ••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주제 발표 1]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

박 인 현(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학회 회장)

- I. 서론
- II. 현행 헌법 교육의 내용
- III. 헌법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분석
- IV. 교사들의 인식결과 분석 시사점
- 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교육과정의 개정이 거듭될수록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과 구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 마련이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헌법교육도 그 중 하나로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내용에서 교육의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항상 체계적인 삽입이 주장되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헌법교육이 체계적으로 등장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저 정치교육의 한 분야로 인식되거나 헌법적 질서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헌법학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로 일관해 왔다.

헌법교육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사회과의 주요 목표인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식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주요 요소

2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와 내용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필자는 초등학교의 정치교육 내용이나 법교육 내용을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현장 교사들이 많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그 내용을 알고는 있다 하여도 그 교육내용의 계열성에 따른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에 있어 학문·철학적인 기준에 의거한 고정된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선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행 초등학교 헌법교육과 그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적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우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에 대한 내용 선정과 구성이 학습자들의 학습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성취도와 학습의 난이도 등을 검증하여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다루고 있는 헌법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함에 다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내용이 결정되고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헌법교육에 대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통하여 효과적인 헌법교육의 방법을 모색해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을 자신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법교육을 위한 일정한 지식과 지도방법에 대한 능력이 요구되지만,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에 비추어 교사들의 이러한 내용적 지식의 습득과 지도능력의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헌법교육을 위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인식과 생각을 통하여 헌법교육의 효

과적인 지도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행 헌법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일반적인 법교육 내지 헌법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헌법교육 일반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영역과 헌법교육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영역, 그리고 헌법교육의 방법적인 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영역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헌법교육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영역에서는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적 인식과 헌법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헌법교육의 중요한 내용과 헌법교육의 종적 계열성 확보를 위한 교육시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문이 제시되었다.

둘째, 헌법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요도와 기본권 및 인권에 대한 기초적 인식 및 기본권 지도의 우선순위, 통치원리와 통치기구에 대한 학습내용과 학습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인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들이 제시되었다.

셋째, 헌법교육의 방법에 대한 영역에서는 헌법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현행 헌법교육의 문제점과 헌법적 지식 습득의 과정과 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들이 제시되었다.

설문 응답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헌법교육 내용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헌법교육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현행 헌법교육의 내용

1. 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내용

우선,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단원이 있다. 이

2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단원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정치적인 삶에 대한 이해와 참여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은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단원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와 역할을 학습하게 되며,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역할 등을 동시에 학습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고 양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그러므로 이 단원의 내용은 헌법교육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정치의 원리와 주요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파악하고, 국가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정된 단원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과 주요 법률이 국민생활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이해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본 구조와 기능 및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법으로 민법과 형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해하여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을 예시하고 있고, 학습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 환경보전,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 및 통치권 운영에 있어서의 삼권분립의 원칙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2. 교과서상 헌법교육의 내용

4학년 1학기 제2단원은 ‘주민 참여와 우리 시·도의 발전’이라는 단원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 단원은 사회과의

조직구조상 환경확대의 원칙에 따라 4학년의 학습범위가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설정됨으로써 도입된 내용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선출 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따라서 시·도청과 시·도 의회의 기능을 나누어 학습하고, 시·도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선출 기준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선거의 4대 원칙을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된 용어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교육적으로 볼 때, 4학년의 학습내용은 지방자치와 선거에 대한 교육이다. 지방자치와 선거는 중요한 헌법내용들이다. 즉,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학습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해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기준 등을 학습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대의 민주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선거참여라는 가치·태도도 기를 수 있게 된다.

6학년 2학기 제1단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단원으로, 모두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생활과 민주주의’로서 생활 속의 정치, 민주주의의 의미,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등을 학습한다. 두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에서는 국회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법원이 하는 일을 학습하고, 세 번째 주제 ‘생활 속의 법’에서는 우리 생활과 법의 필요성, 최고의 법 헌법, 권리와 의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인권과 인권보호’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발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6학년의 경우 정치교육과 헌법교육이 혼합되어 있으며, 생활 속에 있는 민주주의를 학습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이해하게 하고, 통치 권력의 담당기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삼권분립의 원리 등 헌법적 가치인 통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 있는 법으로서 헌법, 민법, 형법과 더불어 학습자들과 관련된 법들을 학습함으

3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로써 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특히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와 더불어 주권의 개념과 담당자 등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Ⅲ. 헌법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사의 인식은 전국을 수도권,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14년 5월~6월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이다. 각 지역별 설문응답자 수는 수도권 지역이 64명, 강원지역 19명, 충청지역 21명, 전라지역 39명, 경상지역 94명 등 모두

237명이다.

남녀의 비율은 여자가 약72%인 171명이고 남자가 28%이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43.9%로 가장 높고, 20대 27.4%, 40대 23.2%, 50대 이상이 5.5%이다.

교육 경력은 5년 미만과 11년 이상~20년 이하인 교사가 각각 37.1%와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년이상~10년이하로 전체의 19.4%, 21년 이상이 11.4%이었다.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는 4학년을 맡아 본 경험이 없는 교사는 전체의 35%정도이고, 6학년을 맡아 본 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12%정도였다.



1.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인식결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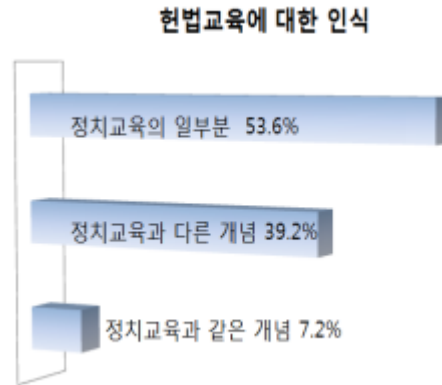
헌법교육은 정치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53.6%였고, 정치교육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7.2% 정도였다. 그리고 정치교육과 다른 개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39.2%였다.

또 정치교육과 헌법교육 중 헌법교육을 먼저 학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54.4%였고, 정치교육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교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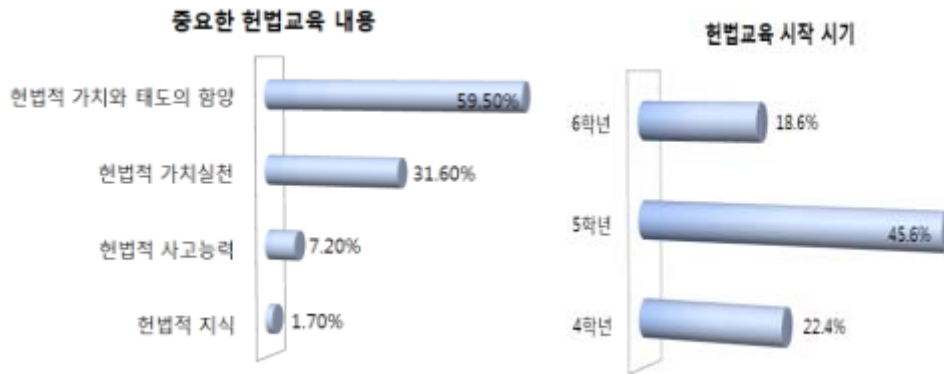
32.9%였다. 그리고 정치교육과 헌법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교사가 12.7%였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64.6%와 31.6%로 압도적이었으며, 왜 헌법교육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97.9%로 통치구조의 이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교육의 이유로 생각하였다.

또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헌법적 지식(1.7%)이나, 헌법적 사고능력(7.2%)보다 헌법적 가치와 태도의 함양(59.5%)과 헌법적 가치실천 및 참여 유도(31.6%)를 꼽았으며, 초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로 적합한 학년은 5학년과 4학년이 각각 45.6%와 22.4%로 6학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18.6%) 비율보다 높았다.



3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 인식결과의 분석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법교육 영역은 오랫동안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역시 정치교육과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치교육과 법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목적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그 사회가 특정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공동체로 존속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간을 양성함에 있다면, 법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 있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전제철, 2006, p.90)고 본다. 즉, 법교육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같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전제하고 그에 적합한 인간상의 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적 지식과 기능을 길러주는 실용성에 있다(J.D.Hoge, 1996, pp.181~182; 박성혁, 2006, p.54)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특정 이념이나 가치와의 관련성이라는 초점으로부터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구분한다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과의 관계는 이와 같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은 특정국가가 그 시대에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불가피하고,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라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다(성낙인, 2006, p.27)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교육은 정치교육보다 더 가치지향

적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교육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전제철, 2006,p.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과에서는 정치교육과 헌법교육을 구분하지도 않고,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구별 필요성조차 인식하지도 않은 채 교육과정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교과교육의 역사를 반영하듯, 과반을 넘는 교사들이 헌법교육을 정치교육과 같거나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도 절대 다수가 헌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교육과 분리하여 헌법교육을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헌법적 가치와 태도의 함양과 더불어 가치실천을 중요한 헌법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나 헌법교육의 내용이 지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교육의 내용이나 초점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교육을 하여야 하는 이유에서 응답한 것처럼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의 학습이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에 더욱 비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헌법교육의 실시가능 시점을 4학년이나 5학년으로 본 것(합하여 67.9%)은, 현재 6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헌법교육을 4, 5, 6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1)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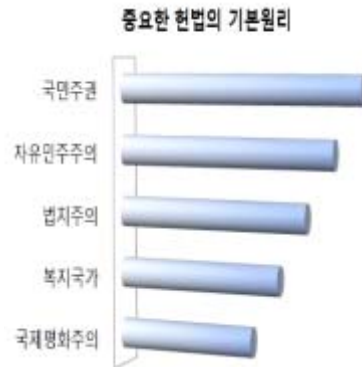
(1) 인식결과의 내용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소의 논란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기본원리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교사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였다. 그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의 원리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전체 응답자 중 99.6%(1명만 제외)가 1순위에서 3순위

3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로 응답하였고,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98.7%, 법치주의 원리는 81.2%가 1순위에서 3순위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등 세 원리는 다른 두 원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인식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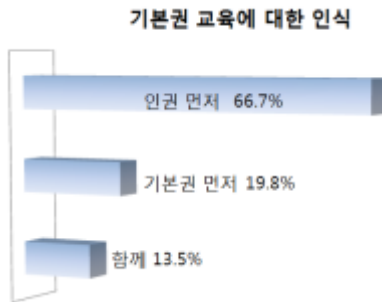
헌법교육이 일반 법교육과 달리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교육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헌법교육은 지식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과 태도와 행동이 교육의 큰 범주라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김현철, 2009, p.95)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헌법교육은 헌법전에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통치구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곧바로 헌법적 가치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헌법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헌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동체 유지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적 가치교육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즉, 헌법학자들이 제시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원리로서 중요한 것은 앞의 세 가지 원리이고, 이를 제외한 복지국가의 원리와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학습내용 및 학습자들의 지적 발달수준과 학습능력을 감안하였을 때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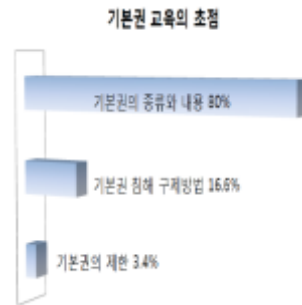
(1) 인식결과의 내용

첫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인권을 바탕으로 기본권이 나오므로 인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전체의 66.7%였고,



기본권의 일부가 인권이므로 기본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9.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것이므로 구분하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은 13.5%였다.

둘째, 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80.0%의 교사가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6.6%의 교사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3.4%의 교사가 기본권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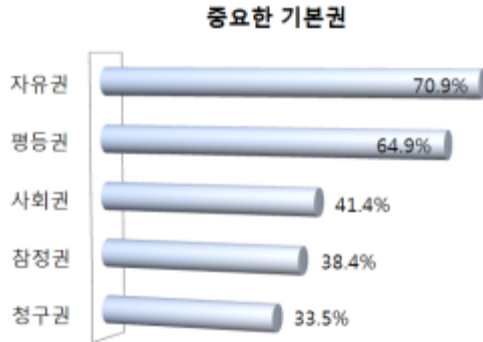


셋째, 기본권의 종류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자유권을 선택한 교사의 비율이 70.9%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본권은 평등권이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64.9%였다. 평등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4.5%여서 이를 모두 합하면 약90%에 달한다. 세 번째 중요한 기본권으로는 사회권인데, 참정권과는 매우 근소한 차이(각각 41.4%, 38.4%)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한 기본권은 청구권으로 56.5%의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기본권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초등학교의 기본권 교육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거나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99.2%였다.

(2) 인식결과의 분석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인 것이며 기본적인 권리(김철수,1999,p.241)이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이다. 그런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 중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도 있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김철수,1999,p.242).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는 어떠한 이론도 없다.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여 규정하는데 비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Grundrechte)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기본권의 표현인 fundamental rights 또한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김대화·박훈,2009,p.74). 이렇듯 나라마다 인권과 기본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변화하고 있어 인권과 기본권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포괄적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의 인식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상당수가 기본권은 인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서로 포함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을 먼저 학습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인권 속에 기본권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제시와 함께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기본권 교육의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 학습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본권 교육의 초점에 있어서는 교사의 절대 다수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나 기본권의 제한보다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기본권 내용에 대한 기초적 지식 습득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침해에 대한 구제나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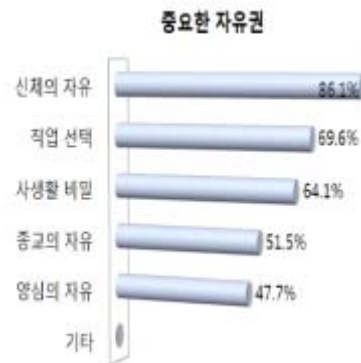
중요한 기본권의 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기본권을 자유권과 평등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성하는 기초적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르치기 쉬운 권리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가장 후순위의 권리로서 청구권을 선택한 것은 위에서 본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비교적 초점을 두려 하지 않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일방적으로 해석될 수 없고, 오히려 교사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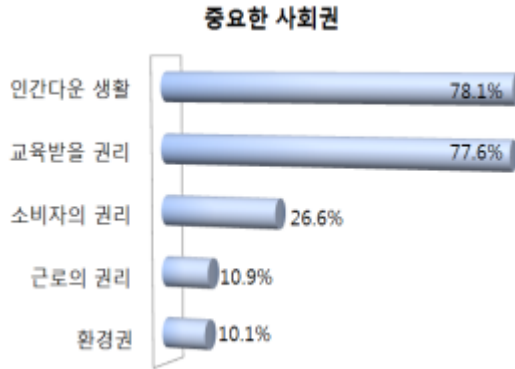
(1) 인식결과의 내용

첫째, 자유권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이미 응답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권의 내용 중 12가지를 제시하고 그 중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하고, 꼭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권 다섯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로 응답자 237명 중 204명이 응답하여 약86.1%의 응답율을 보였다. 그 다음이 직업선택의 자유(69.6%), 사생활 비밀의 자유(64.1%), 종교의 자유(51.5%), 양심의 자유(47.7%)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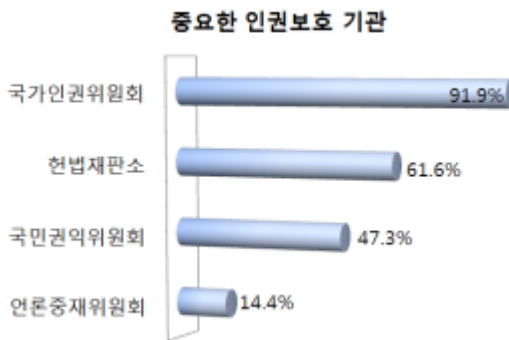
이었다. 그 뒤를 이어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예술의 자유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사회권 중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지도가능하고 꼭 지도되어야 할 두



가지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78.1%)와 교육받을 권리(77.6%)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26.6%)와 근로의 권리(10.9%), 환경권(10.1%) 등의 응답이 있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는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 중 꼭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



셋째, 현재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과정에서 소개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91.9%). 그 다음이 헌법재판소였고(61.6%), 국민권익위원회(47.3%), 언론중재위원회(14.4%)의 순이었다.

(2) 인식결과의 분석

자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내용을 가진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유권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교에서 모두 학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유권을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친다면 중요한 헌법교육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권의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네 가지를 예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지도되어야 할 자유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대하여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자유권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적인 생활이익의 보호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의 보호는 자

유권 보호의 우선적 순위에 해당된다는 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와 함께 양심의 자유도 과거에는 추상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나머지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식된 것과 달리 지금은 실질적·구체적인 권리로 인식되는 면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교사들은 사회권 중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대표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사회권의 두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런데 교사들이 교육받을 권리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못지않게 사회권의 주요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교사로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의 보유와 더불어 교육이 인간다운 생활의 정신적 요소임을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사들은 사회권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핵심적 권리의 내용으로 다른 권리들, 즉, 근로나 환경, 소비자의 권리들에 우선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중요한 사회권의 내용으로 생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정도의 기관만을 초등학교에서 지도 가능한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이라고 응답한 것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이 기관들의 활동 증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의 기능 강화 및 활발한 활동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아직 기관 자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인식 및 활동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율을 보여 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지도하여야 인권보호 기관으로 인식율이 낮은 것은 기능이나 활동의 내용이 아직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4) 국민의 의무에 대한 인식

(1) 인식결과의 내용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4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들 의무 중 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무의 순위를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납세의 의무는 3순위가 가장 많고(24.8%), 그 다음이 4순위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나(22.2%), 1순위(20.9%)나 2순위(18.7%)로 생각하는 교사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교육받을 의무는 1순위로 생각하는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62.1%에 달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2순위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19.2%, 3순위 응답자는 11.1%이었다.

근로의 의무는 2순위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37.6%, 3순위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26.5%, 4순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1.4%였다.

국방의 의무는 전체 응답자 중 40.5%에 달하는 교사들이 5순위로 생각하였고, 29.3%의 응답자는 4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환경보존의 의무는 36.4%의 교사들이 5순위라고 생각하였고, 4순위와 3순위라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각각 22.1%, 21.7%로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에 대한 중요도와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제1순위가 교육받을 의무이고, 제2순위는 근로의 의무, 제3순위는 납세의 의무이다. 4순위와 5순위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환경보존의 의무보다 4순위에서도 높고, 5순위에서도 절대 응답율이 더 높다. 따라서 두 의무 간에는 순위를 판정하기가 어려웠다.

국민의 의무에 대한 인식



(2) 인식결과의 분석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교사의 인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적인 의미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교사들은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자로서 가지는

교육과 근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의무의식보다는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권리인식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의무도 권리 이면(裏面)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나머지 이와 같은 의무를 우선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의무로 생각하고, 권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대 의무 중 가장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둘째,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에서 국방에 대한 의무를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의 사회적 상황 및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술선수범하지 못하는 사회지도 계층의 행태와 정전적 대치상태로 수 십년에 걸친 평화적 상황의 지속이 안보에 대한 둔감상태로 이어지고, 국방의 중요성이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려난 것 등의 영향이 이러한 인식에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연령대가 20~30대가 70%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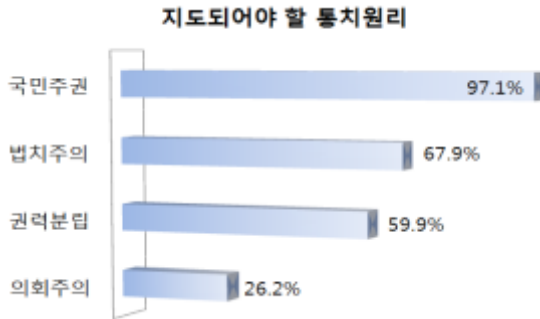
5) 통치원리 및 통치기구에 대한 인식

(1) 인식결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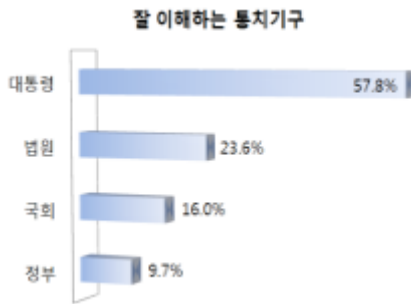
첫째, 우리 헌법의 통치원리 중 초등학교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통치원리로 가장 먼저 국민주권의 원리를 꼽았다(97.1%). 다음은 법치주의의 원리(67.9%)를 들었고, 세 번째로 권력분립의 원리(59.9%)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주의 원리라고(26.2%) 응답하였다.

둘째, 통치기구에 대한 학습 내용 중 초등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용(57.8%)이었고, 그 다음이 법원에 대한 내용(23.6%), 국회에 대한 내용(16.0%), 정부에 대한 내용(9.7%)의 순이었다. 이 설문에서는 두 개의 항목에 응답한 교사들이 있어서 각 항목의 응답자 수가 254명으로 집계되지만, 비율은 237명으로 통계를 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응답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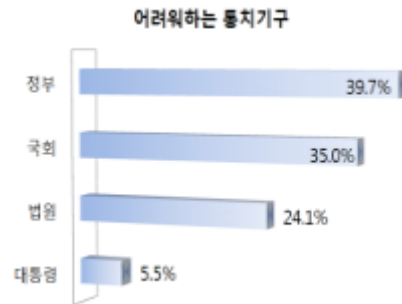
4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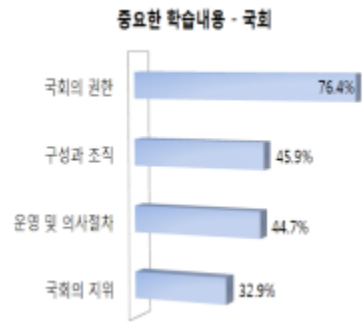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5.5%였다.



반대로 초등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통치 기구에 대해서는 위의 순서와 정확하게 역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정부에 대한 내용이 39.7%, 국회에 대한 내용이 35.0%, 법원에 대한 내용이 24.1%,



셋째, 국회에 대한 학습내용을 네 가지 제시하고 이 중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하고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만 가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율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 권한이 76.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제1순위의 학습내용이었다. 다음이 국회의 구성과 조직(45.9%), 그리고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44.7%), 국회의 지위(32.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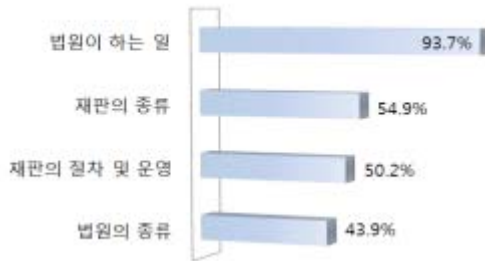


넷째, 국회의원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92.4%로서 가장 많은 응답율을 기록하였고, 다음이 국회의원의 선출(79.3%), 국회의원의 지위(12.2%), 국회의원의 특권(5.5%)의 순이었다.

다섯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교육내용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별개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가 84.1%로 대부분이었고, 국가원수는 따로 학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9%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법원에 대한 교육내용 중 초등학교의 수준에서 지도가능하면서 반드시 지도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법원이 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93.7%로 가장 많았고, 재판의 종류(54.9%)와 재판의 절차 및 운영(50.2%), 그리고 법원의 종류(43.9%)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 설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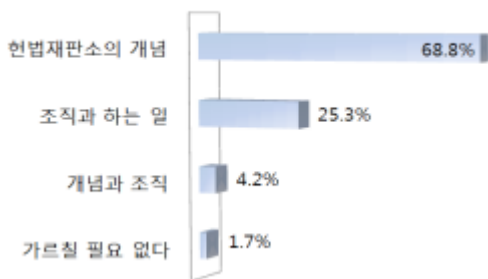
중요한 학습내용 - 법원



을 다룬다면, 헌법재판소의 조직(2.9%)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49.4%)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일곱째, 현재 초등학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개념 정도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많았고, 조직과 하는 일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가 그 다음으로 많은 25.3%였다. 그리고

내용의 범위와 수준 - 헌법재판소



개념과 조직까지만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4.2%)와 아예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1.7%)도 있었다.

여덟째, 헌법교육 내용 중 선거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선거관리는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7%이고, 개념정도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8%였다. 선거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4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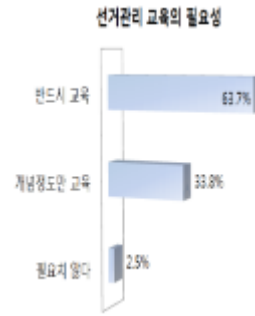
사람은 2.5%로 극히 소수였다.

(2) 인식결과의 분석

우선, 교사들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등 세 원리를 초등학교에서 지도 가능한 통치의 원리(W.C.Parker,2009.p.211)로 본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지도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세 원리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원리가 권력분립의 원리이고 권력분립의 원리로 인하여 법치주의의 원리가 요구됨을 인식한다면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민주권의 원리와 동일하거나 차순위의 원리로 응답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헌법교육의 내용이 권력분립의 기능과 가치보다는 통치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치중되어 있고, 인권과 통치기관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된다(정상우,2013,p.101)는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의 성취도가 가장 높은 통치기구로는 대통령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가장 학습성취도가 낮은 기구를 또한 정부라고 응답한 것은 정부에 대한 학습내용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 희소성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에 대한 학습이 정부의 기능보다는 정부의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응답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가장 학습하기 힘들어 하는 통치기구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게 역순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통치기구의 기능과 업무, 구성원의 수 그리고 조직의 규모 혹은 방대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구성원의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조직의 기능이 분명하면서 방대하지 않을수록 학습의 이해도나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회에 대한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보다는 국



회가 하는 일(권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국회에 대한 학습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학습내용도 국회의원의 권한과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선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압도적인 이유는 최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된다.

교사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고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존재이기는 하나, 행정부와 별개로 학습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가졌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심리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치관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에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에 대하여 학습하여야 할 우선적인 내용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교사들이 법원이 하는 일과 재판의 종류, 그리고 재판의 절차와 운영이라고 응답한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의 결과로 보이지만, 재판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증거재판주의에 대하여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교사들이 사법적 판단의 원리에서 차지하는 증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도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도현장에서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판의 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초등학교의 학습단계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헌법기관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선거관리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에 대하여 개념만이라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최저수준에서의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임은 선거관리가 민주

4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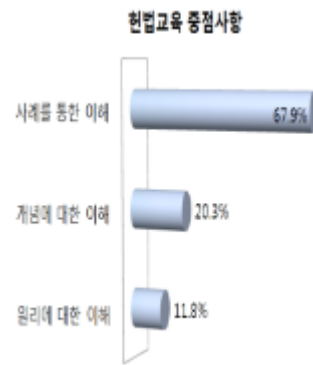
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헌법교육의 방법에 대한 인식

1) 헌법교육 내용의 학습 중점에 대한 인식

(1) 인식결과의 내용

초등학교 헌법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67.9%에 달하는 교사들이 사례를 통한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3%의 교사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나머지 11.8%의 교사들이 원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인식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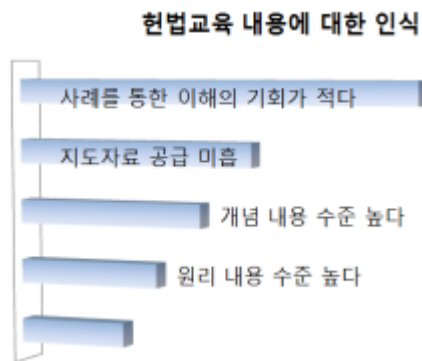
교사들이 헌법교육의 강조점을 사례를 통한 이해에 둔 것은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전통적으로 법교육의 방법적인 강조점을 동시에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 지식 위주의 암기식 수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사례를 통한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하였던, 헌법적 지식의 습득보다 헌법적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헌법적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헌법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습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생활에서 헌법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박상준,2013,p.83)라고 하였듯이, 실천적 가치관을 가지는 데에는 사례를 통한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교육의 강조

점은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관점

(1) 인식결과의 내용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62.9%의 교사들이 사례를 통한 원리나 개념의 이해 기회가 적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37.6%의 교사들이 지도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 개념에 대한 내용의 수준이 높아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29.5%)

하고 있고, 원리에 대한 내용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2.4%였다. 가장 응답율이 낮기는 하지만 16.9%의 응답자가 원리와 개념의 수준보다는 분량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인식결과의 분석

교사들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교육의 내용들에 대하여 두 가지의 평가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헌법교육의 강조점에서도 보여 주었던 듯이, 현행 교육과정은 사례를 통한 원리나 개념의 이해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지도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은 사실 동일한 평가의 시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교육의 내용을 지도할 자료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지식 자료는 많이 존재하지만, 사례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사례 지도 자료의 개발과 제공은 이러한 두 가지의 부정적 평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들의 이러한 평가관점을 고려해 볼 때, 헌법교육의 성패는 헌법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기능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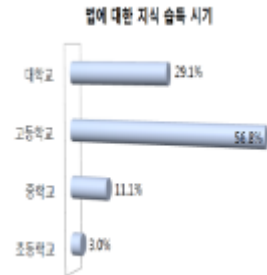
4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공에 달려 있다(박상준,2013,p.83)는 것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3) 헌법적 지식 습득의 과정과 시기

(1) 인식결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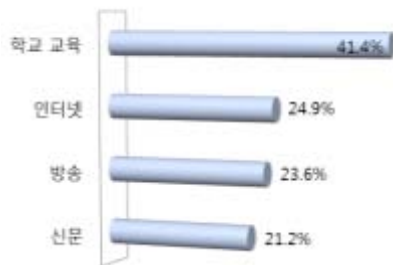
첫째, 교사들은 일반적인 법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얻은 시기를 고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56.8%의 비율을 보이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29.1%) 시기였고, 중학교(11.1%)와 초등학교(3.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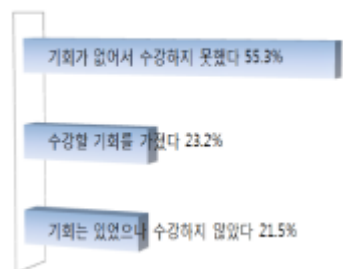
둘째, 교사들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헌법적 지식을 얻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41.4%), 신문(21.2%)이나 방송(23.6%), 인터넷(24.9%) 등을 통하여 헌법적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를 넘어 모두 합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헌법적 지식 습득기회에 대하여, 55.3%의 교사들이 기회가 없어서 수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기회가 있었으나 수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가 21.5%, 수강할 기회를 가졌다는 교사는 23.2%에 불과하였다.

법에 대한 지식 습득 경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헌법적 지식 습득 기회



(2) 인식결과의 분석

교사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학교교육의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교육 시기보다 무려 2배가량이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헌법지식의 습득경로와 교원양성대학에서의 습득 기회에 대한 위와 같은 응답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미의 해석을 얻어 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30~40대 교사들이 고등학교 재학시 ‘법’에 대한 과목(법과 사회 등)이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과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 상당수의 학생들이 법에 대한 내용을 이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대부분 교원양성대학인 교육대학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 정도만이 대학시기에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응답한 것은 교원양성대학의 프로그램에서 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을 직접 담당할 교사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헌법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과반을 보인 것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현실적으로 헌법과 관련된 강좌를 직접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대학은 대구교대와 서울교대 등 소수에 불과하며, 강좌개설이 전무한 대학도 있다(허종렬,2012,p.119).

셋째, 헌법적 지식의 습득 경로에 있어서도 항목별로는 학교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지만, 중복적 응답을 고려하더라도 신문, 방송,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로서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경로에 의한 습득이 학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단편적인 헌법적 지식의 습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헌법적 가치교육과 가치를 위한 헌법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학교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헌법교육 내용 지도상 문제점

(1) 인식결과의 내용

교사들이 현재 헌법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점은 헌법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69.2%)하였다. 그 다음은 교사의 헌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54.6%)과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54.4%)는 점을 비율에 큰 차이

5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없이 애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헌법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교사도 43.5%에 이르렀다.

(2) 인식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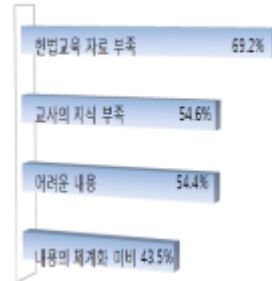
위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들이 헌법교육의 내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의 헌법교육의 구성내용이 헌법적 지식 위주로 설명을 통한 개념 및 원리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료란 지식적인 자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원리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사례 자료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헌법적 지식 부족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양성체제에서의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헌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체계적인 지도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헌법교육의 내용이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두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는 바, 하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경우와, 교사의 헌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지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의 프로그램에서 헌법교육의 방법론 모색과 더불어 헌법교육 내용의 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교육의 문제점



IV. 교사들의 인식결과 분석 시사점

1. 헌법위주의 헌법교육 내용의 독립적 구성

최근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역사를 돌아볼 때 많은 진전

이 있었다고 보인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은 완벽하게 정치교육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헌법교육의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구분되지 않은 채 존재해 있다. 이는 교육과정 편성권을 가진 사람들 중 헌법교육은 정치교육의 일부분이거나 정치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헌법의 기능과 지위를 보면,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어 헌법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더 이상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공법(空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헌법은 생활법 교육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전제철, 2006, p.92). 따라서 사회과 내에서 헌법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헌법교육이 정치교육의 일부분이 아니라 헌법이 가진 기본적인 원리 하에서 민주적인 국민 생활이 영위된다는 것을 이해시켜려면 법교육 영역, 특히 헌법교육이 스스로의 학문적 논리에 의하여 그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정치교육과 헌법교육과의 관계 인식 결과는 이러한 과제가 헌법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백한 과제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예컨대 헌법의 통치권력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함에 있어서도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법교육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수업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혁, 2005, p.56, p.75).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력의 구조를 국가 사회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치교육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의식이나 법의식을 통하여 권력의 통제와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자질의 함양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헌법교육은 그 목표, 내용, 방법 등에서 정치교육의 내용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에서 헌법교육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헌법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하는 논리적 기반이며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과 자질을 갖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2. 헌법교육 내용구성의 논리적 체계 확립

1)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정립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과 기본권은 그 포함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과 기본권은 헌법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고, 헌법가치 교육을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교육을 위한 관계의 논리적 체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마다 기본권을 의미하는 용어와 인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헌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인권과 기본권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둘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인권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교육에서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기본권의 보호 노력을 강조하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기본권 교육에서 기본권의 분류체계와 성격에 치중된 지식적 차원의 교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권 감수성의 강조나 인권 침해 구제 등이 헌법교육에서 실천적 과제이므로 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상우, 2013, p.101)는 견해는 모두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논리로 볼 수 있다.

즉, 인권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생래적 자연권이므로 현재 인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또 다른 인권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이 인정되는 인권은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인권으로부터 구체화되는 것이며 현재의 헌법적 논리체계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인권을 바탕으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인권을 교육한 후에 기본권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은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나, 그러한 논리적 바탕위에서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은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따로 다루는 것은 교사들에게 인권과 기본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인지적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습하는 순서도 권리에 대한 인식형성과 체계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의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원리의 연계

권력분립의 원리는 현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권력분립 원리의 학습이 인권 및 기본권 보장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각 통치권력 기구 자체의 기능과 권한 위주로 학습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헌법교육의 핵심적 원리와 가치를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권한과 기능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보장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정상우, 2013, p.101)고 함은 통치권력 기구에 대한 교육이 기본권의 보장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헌법교육의 논리적 체계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권력분립의 원리를 학습하는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논리적인 체계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통치권력 기구에 대한 내용 역시 권력분립의 의미와 그에 따른 통치권력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권력 기구 중 법원만이 그 하는 일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장을 두고 있을 뿐이다. 또 기본권 및 인권과는 별개로 다루고 있으며, 학습하는 순서도 먼저 학습하도록 계열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거니와 논리적 인과관계를 통한 사고로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학습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길러 주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요컨대,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만큼이나 중요한 헌법 원리이

고, 헌법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교육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리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여야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원리임을 강조하는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헌법교육 내용구성의 선택적 집중화

1) 기본권 교육 내용의 선택과 집중

기본권의 내용은 방대하다.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의 기본권에 대하여 각 기본권을 개념 정도만 소개하면서 피상적이거나 모두 학습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 중에서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학습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설문 응답결과는 여기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현실적으로 현행 헌법교육 내용의 구성을 보면 국민의 다섯 기본권이 소개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수준의 간략한 개념 규정만으로 그치는 정도로 구성하고 있어, 그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의 자료수집 및 지도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본권 교육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학습자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이해와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태도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헌법상 제시되는 모든 기본권에 대한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저 암기식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 중 평등권과 자유권, 사회권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기본권으로 선택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평등권의 경우에는 불평등의 요소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 자유권의 경우는 그 내용이 많지만, 신체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학습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의 기본이고, 직업선

택의 자유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는 자유권의 내용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기본권 학습에 학생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권의 내용도 종류와 범위가 매우 넓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로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선택할 경우 기본권 중 초등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집중하지 못한 기본권이나 기본권의 내용에 대하여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계열성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권의 학습을 인권과 연계하여 학습할 경우,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에 대한 학습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을 단지 나열하여 소개할 것이 아니라 헌법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기구나, 헌법적 기구는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구로 집중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독립적인 인권보호 및 감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2) 통치기구 학습 내용의 선택과 집중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통치기구에 대한 학습내용을 반드시 균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어길 수 없는 철칙처럼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학습내용 배분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학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본권 보장이나, 국민의 생활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통치기구에 대하여는 그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편일률적으로 분량을 배분하여 학습하는 것은 헌법상 통치기구의 기능이나 지위 및 책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있는 국회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선출되어 구성되지 않는

법원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력기구의 균등 배분적 학습내용의 구성이 곧 권력분립의 의미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헌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의 구체화 및 강화

과거에는 여러 여건상 사법이 권리 중심의 법이고, 공법이 의무 중심의 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전계철,2006,p.88). 그리고 공법교육의 배경을 국민에게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치적인 편익이 작용하여 과거에는 사법교육보다 공법교육을 강화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김병수,1992,p.39).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함께 지배와 복종이라는 종적인 인간관계를 위주로 하는 동양적 인간관계와 법이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로 인하여 공법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법을 계수한 우리 사회에서는 인위적인 사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박성혁,1994,pp.102~103;전계철,2006,p.89재인용).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사회과에 법교육 내용이 등장하면서 사법적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주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헌법이라고 하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즉, 헌법은 그 최고규범성으로 인하여 꼭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법 중 하나이다(김다현,2008,p.40). 그러나 분명 헌법에서 구성하고 조직되어 있는 기능대로 국가는 분화되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김다현, 2008,p.40). 즉, 헌법은 조직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행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을 가진 법은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모든 조항은 하위 법령의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작용과 더불어 현실적, 구체적으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현실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의 과정과 법교육 내용의 구성과정에서 우리는 권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의 결과 우리는 권리에의 과도한 집착 및 지나친 주장에는 익숙하지만,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데에는 소홀한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소위 권리의식에 비하여 의무와 책임의식의 결여라는 불균형적 감각을 지니게 만든 것이다.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교육은 헌법교육상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인 헌법적 가치의 실천 차원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형성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가의 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대한 학습내용의 강조점을 새로이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순수한 국가적 의무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사례 지도자료 제공의 필요성

헌법교육의 접근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헌법 및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자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헌법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지식적 차원의 헌법교육이라 한다(곽한영, 2009, p.5).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없이 가치나 행동이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접근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지식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단지 지식 전달 수준에서 머물고 이에 매몰되는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곽한영, 2009, p.6).

다음은 헌법교육을 가치교육의 중요한 매개로 인식하는 가치적 차원의 것으로 이를 가치적 차원의 헌법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교육이 중심이 된 헌법의 기본권 교육 강화를 주장한 연구도 있고(김미희, 2007, pp.1~23), 통일에 대비한 가치교육의 체계로서 헌법교육의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김각, 1995, pp.56~77).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의 헌법교육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주장의 대립이 있다. 하나는 헌법교육은 헌법을 통해 참여와 능동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헌법교육이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규범성

5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과 실정성만을 너무 강조하여 결국 능동적 시민성을 길러내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김다현,2008,p.35~41). 대립되는 주장은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하여 무분별한 참여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무정부적 영역으로의 변질을 가능하게 하므로 참여지향적인 시민사회에서 규범지향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의 기준이자 수단이 헌법교육이라고 주장한다(전제철,2007,pp.254~256).

이상과 같은 헌법교육의 차원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헌법교육에 동시에 존재한다(곽한영,2009,p.7)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헌법교육도 이와 같은 세 차원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은 주로 지식적 차원의 헌법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통치기구의 종류 및 기능 등과 같은 사실이나 개념적 지식의 습득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의 설문응답에서도 나타났지만, 지식적 차원의 헌법교육을 하든, 가치적 차원의 헌법교육을 하든, 행동적 차원의 교육을 하든 헌법교육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학습방법은 사례를 통한 개념과 원리의 습득이며, 이것이 곧 가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도 이제 수없이 많은 판례를 축적하였고, 우리와 체제와 이념은 달리 하지만 우리의 제도나 이념에 영향을 미친 다른 나라의 다양한 판례와 사례들도 있다. 최근 많은 경로들을 통하여 사례교육을 위한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의한 자료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판례와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의 헌법교육을 위한 자료로 개발하여 학교교육에 제공하느냐에 따라 헌법교육의 성패와 정체성이 좌우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개발 책임은 헌법교육 연구자들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6. 교원양성과정 중 헌법교육 강좌 개설 필요

이번 연구의 설문 응답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거니와, 연구자가 실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들과 수업을 하는 과정이나 면담 과정에서 상당수의 교사들이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지도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호소하였다.

현재 교사들이 지닌 헌법교육을 위한 지식은 고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시기의 교육은 대부분 자신의 입시를 위하여 암기한 지식이다.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헌법교육의 지도능력을 갖추게 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지식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강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회과 속에는 헌법교육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적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교사의 기본적 소양으로서의 헌법적 가치 함양과 헌법적 가치 실천 의지를 위해서도 교원양성대학에서의 헌법교육 강좌 개설은 필요하다.

요컨대, 교원양성대학의 헌법교육 프로그램은 헌법의 역사적 형성에 대한 교육과 헌법의 이념, 인권과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과 통치기관의 역할 등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공유를 위한 교육과 일상생활적 요소나 헌법가치의 실천이 구현되는 소재를 활용한 헌법교육 혹은 입법과정이나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교육 등 헌법가치의 실천 교육(정상우, 2013, pp.100~103)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 헌법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법 중 대표적인 법으로 인식되어 온 헌법교육의 초점이 의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권과 기본권 교육의 수단으로 헌

6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교육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법교육이 독립적 영역으로 대두되면서 생활법 교육으로서의 사법(私法)교육과 범죄와 형벌 등에 대한 형법교육 등과 함께 헌법교육도 같은 병렬적 대등관계로 보고 이루어져 왔으나, 사법이나 공법을 아우르는 최고법이며,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법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교육이 다른 하위 법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셋째, 헌법은 전통적으로 조직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낮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른 하위 법률에의 구속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헌법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헌법교육 내용이 많이 부각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교육은 아직도 정치교육의 부분으로 다루어지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의 내용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헌법교육은 개인의 권리의식이나 법의식을 통하여 권력의 법적 통제와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자질 함양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 구성에서 논리적인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의 방법을 달리하여 헌법교육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정립을 분명히 하여 내용을 구성하되, 기본권을 학습하면서 인권과의 개념상의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강조되는 기본권 학습은 헌법교육의 측면에서 실천적 과제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권력분립의 경우에도 권력기구의 종류와 조직 및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은 헌법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권력분립이 국민의 기본권과 연계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는 내용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이해하는 헌법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권과 권력분립은 직접민주제도의 한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며, 권력분립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의 내용은 개념적 나열이면서 분량에 있어 균형적 배분이 특징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구성은 결국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방법을 강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따분함과 지루함이 지배하는 수업으로 인식되고,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교수방법을 탐색할 여유를 주지 못하고 평가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수전략만을 모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방대한 기본권의 내용과 통치기구에 대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간임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열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지니되 동일한 수준과 차원의 내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헌법교육 내용의 구조화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평등권과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은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지도 가능한 기본권으로 사료되며, 자유권과 사회권의 내용에서도 선택적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치기구의 경우에도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균형 있는 기본가치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법인 헌법 교육이 의무중심의 교육에서 권리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에 대한 가치교육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인식의 수정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은 권리의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인식의 정립과 의무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상응하는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순수한 의무를 수용하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논리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헌법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례를 통한 개념 및 원리의 이해와 더불어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적 실천의지를 길러 주기 위한 자료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구체적이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정교한 자료의 개발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사양성 과정에서의 헌법교육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곽한영(2009).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 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김각(1995). 세계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헌법가치실현으로서의 통일교육의 과제-고등학교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와교육 제21권.
- 김다현(2008).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독일의 헌법관을 토대로-,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김대환·박훈(2009).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김미희(2007).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법교육연구 제2권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김병수(1992). 시민교육으로서의 사법교육 강화의 필요성-고등학교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수(1999). 헌법학개론, 서울:법문사.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박상준(2013).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2호.
- 박성혁(1994).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법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사법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18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박성혁(2005). 법교육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박성혁(2006). 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 성낙인(2006). 헌법학, 서울:법문사.
- 전제철(2006).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제2호.
- 전제철(2007). 규범지향적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8권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고찰, 법과인권교육 연구 제6권제2호.

허종렬(2012).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과 교원양성대학의 과제-법교육의 관점을 포함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Hoge, J. D., Effective Elementary social studies, Wadsworth Publishing Co., 1996.

Parker, W. C.,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13th Ed., Pearson Edu. Inc., 2009.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 연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설문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교육의 내용과 수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자들의 발달상황과 학습능력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견해와 생각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응답은 매우 소중한 연구자료와 기초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응답하기 좋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으니, 설문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아니하며, 본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정보는 다른 일체의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답 방법은 설문의 해당되는 란에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인현 올림

◆ 응답자 ◆

□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수도권 () • 강원지역 () • 충청지역 () • 전라지역 () • 경상지역 ()

□ 선생님의 성별은?

- 남 () • 여 ()

□ 선생님의 연령대는?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이상 ()

□ 선생님의 경력은?

- 5년 미만 () • 5~10년 () • 11~20년 () • 21년 이상 ()

□ 선생님께서 한 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학년은?

- 3학년 () • 4학년 () • 5학년 () • 6학년 () • 모두 다 해봄 ()

◆ 헌법교육 일반 ◆

1.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의 개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헌법교육은 정치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 헌법교육은 정치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은 다른 개념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
2.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을 다루는 순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정치교육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
 - 헌법교육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
 - 같은 것이므로 구분하지 말고 다루어야 한다. ()
3.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반드시 필요하다. ()
 - 어느 정도 필요하다. ()
 - 거의 필요치 않다. ()
4.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 헌법적 지식을 많이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 헌법적 사고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 헌법적 가치와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
 - 헌법적 가치실천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초등학교 헌법교육은 어느 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학년 ()
 - 4학년 ()
 - 5학년 ()
 - 6학년 ()
6. 헌법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알게 하기 위해서 ()
 -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구조를 알게 하기 위해서 ()

◆ 헌법교육 내용 및 방법 ◆

7. 헌법의 기본원리 중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중요한 순서대로 1~5).
 - 국민주권의 원리 ()
 - 자유민주주의 원리 ()
 - 법치주의 원리 ()
 - 복지국가 원리 ()
 - 국제평화주의 원리 ()
8.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이 두 개념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인권을 바탕으로 기본권이 나오므로 인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
 - 기본권 중 일부가 인권이므로 기본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
 -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것이므로 구분하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 ()
9. 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기본권의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10. 기본권을 가르친다면 어떤 권리부터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서를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순서대로 1~5).
- 자유권 () • 평등권 () • 청구권 () • 참정권 () • 사회권 ()
11. 국민의 의무를 가르친다면 어떤 의무부터 중요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서를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순서대로 1~5).
- 납세 () • 교육 () • 근로 () • 국방 () • 환경보존 ()
12. 자유권의 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하고, 또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섯 개만(5개)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신체의 자유 () • 거주·이전의 자유 ()
 - 직업선택의 자유 () • 주거의 자유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통신의 자유 ()
 - 양심의 자유 () • 종교의 자유 ()
 - 언론·출판의 자유 () • 집회·결사의 자유 ()
 - 학문의 자유 () • 예술의 자유 ()
13. 사회권의 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지도가 가능하고, 또 지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둘만(2)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교육받을 권리 () • 근로의 권리 ()
 - 소비자의 권리 () •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
 - 보건권 () • 재판받을 권리 ()
 - 청원권 () • 환경권 ()
 - 국가배상청구권 () • 혼인 및 가족권 ()
14. 초등학교의 기본권 교육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다. () • 어느 정도 필요하다. () • 필요하지 않다. ()
15. 초등학교에서 소개되는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지도되어야 한다고(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국가인권위원회 () • 국민권익위원회 ()
 - 헌법재판소 () • 언론중재위원회 ()
16. 통치원리에 대한 교육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꼭 지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국민주권의 원리 () • 권력분립의 원리 ()
 - 의회주의의 원리 () • 법치주의의 원리 ()
17.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다(한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 국회에 대한 내용 ()
- 정부에 대한 내용 ()
- 대통령에 대한 내용 ()
- 법원에 대한 내용 ()

18.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 국회에 대한 내용 ()
- 정부에 대한 내용 ()
- 대통령에 대한 내용 ()
- 법원에 대한 내용 ()

19. 국회에 대한 교육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꼭 지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둘만(2)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국회가 가지는 지위 ()
- 국회의 운영·의사절차 ()
- 국회의 구성과 조직 ()
- 국회의 권한 ()

20.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꼭 지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국회의원의 선출 ()
- 국회의원의 지위 ()
-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 ()
-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 ()

21. 대통령과 행정부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므로 함께 학습하여야 한다. ()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므로 별개로 학습하여야 한다. ()

22. 법원에 대한 교육내용 중,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또 꼭 지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어떤 것입니까?

- 법원의 지위 ()
- 법원의 종류 ()
- 재판절차와 운영 ()
-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
- 법원이 하는 일 ()
- 재판의 종류 ()
- 증거 재판 주의 ()
- 헌법재판소의 조직 ()

23. 초등학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의 개념 정도로 충분하다. ()
- 헌법재판소의 개념, 조직까지 가르쳐야 한다. ()
- 헌법재판소의 개념, 조직, 하는 일까지 가르쳐야 한다. ()
-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없다. ()

24. 초등학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거관리는 중요하므로 꼭 필요하다. ()
- 개념 정도만 필요하다. ()
- 필요하지 않다. ()

6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5. 초등학교 헌법교육은 주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
-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
- 사례를 통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

26. 현재 초등학교의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원리에 대한 내용의 수준이 높아 이해하기 어렵다. ()
- 개념에 대한 내용의 수준이 높아 이해하기 어렵다. ()
- 원리와 개념의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분량이 많다. ()
- 사례를 통한 원리나 개념 이해의 기회가 적다. ()
- 지도 자료가 부족하여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27. 선생님께서 법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학교교육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28. 선생님은 헌법적 지식을 주로 어디서 얻으셨다고(혹은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 • 신문 () • 방송 () • 인터넷 () • 모임 ()

29.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교)에 재학 중 헌법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기회가 있어서 수강하였다. ()
- 기회가 있었으나 수강하지 않았다. ()
-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강하지 못했다. ()

30. 헌법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애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교사의 헌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이다. ()
-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 헌법교육의 교육과정 내용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
- 헌법교육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암기 중심 수업이 되는 점이다. ()

-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주제 발표 2 ••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

[주제 발표 2]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

박 상 준(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 I. 문제 제기
- II. 헌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 III.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 IV. 초등 사회과에서 헌법교육 단원의 구성 방향
- V. 맺음말
- * 참고문헌

I. 문제 제기

지난 9월 24일 교육부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인문 사회적 소양교육과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현재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안에 의거해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의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를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헌법교육의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과 내용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II. 헌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1. 헌법교육의 의미와 목표

헌법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박상준, 2013b: 67-69). 첫째, 헌법교육을 법교육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관점, 즉 ‘법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이다. 이 관점은 헌법을 통해 법적 사고력이나 헌법적 가치의 교육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곽한영은 “헌법교육은 법적 사고와 건전한 법의식의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 법교육의 핵심 내용이다”고 규정하였다(곽한영, 2009: 19). 김현철은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일반인에게 헌법을 통한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나 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교육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헌법은 근대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의 체계화이기 때문에, 헌법교육은 가치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현철, 2009: 91,95).

둘째, 헌법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관점, 즉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이다. 이 관점에서는 민법교육이나 형법교육과 동등한 위치에서 헌법교육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비판하고, 헌법적 정신과 가치의 교육을 통해 주권자로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전제철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헌법교육을 정의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헌법교육은 미래의 정치적 주권자인 학생들에게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규정하였다(전제철, 2005: 83, 86). 비슷한 맥락에서 정상우는 공동체 삶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와 태도를 습득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헌법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를 습득하고 실천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아를 이어가는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다”라고 정의하였다(정상우, 2013: 19-21).

하지만 두 관점은 헌법교육의 위상이나 중요성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두 관점 모두 헌법교육은 헌법적 지식 또는 헌법적 정신이나 가치의 교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헌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두 관점의 공통된 견해를 찾아보면, 헌법교육은 초·중등 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헌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기본권(인권),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통치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상준, 2013b: 68-69).

이런 점에서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은 사회과 법교육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회과는 민주국가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과교육이고(박상준, 2013a: 14-16), 법교육은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시민, 즉 ‘법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이다(박상준, 2013a: 56-57). 법 교육으로서 헌법교육도 헌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헌법상 주권과 기본권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헌법교육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적 가치 및 태도에 기초하여 헌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 및 가치를 실현하고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마디로 헌법교육은 민주국가에서 요구되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자질-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상준, 2013b: 69).

그러면 헌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르쳐야 할 헌법 관련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 헌법교육의 내용

2013년 5월 법무부는 학교 교과교육에 반영시켜야 할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인간 존엄, 가치 상대주의, 민주주의의 원리, 권리, 책임, 정의, 법치주의’ 등으로 제시하였다(법무부, 2013.5.23; 연합뉴스, 2013.5.23.). 2001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그런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서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같은 이념적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238·302병합).

또한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의 전문과 구조에 천명된 ‘헌법의 기본 정신이나 이념’은 (1)민주공화국, (2)국민주권주의, (3)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4)기본권 보장주의, (5)정의·인도애, (6)평화 통일과 국제평화로 요약된다(권영성, 2010: 126-130; 김철수, 2008: 26; 정중섭, 2007: 189). 한상범은 전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정신을 (1)인권 존중주의 정신(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행복추구권), (2)인권 존중하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정신, (3)민주주의 가능 요건으로서 평화와 질서(국제 평화와 평화 통일), (4)악법과 폭정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제시하였다(한상범, 2008: 84-86). 이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 이념과 원리를 규정하고 국가와 개인의 상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을 구체화하여 정치 질서와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헌법 전문에서 천명한 기본 정신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총강과 각 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1)국민주권주의, (2)자유민주주의, (3)복지국가주의, (4)문화국가주의, (5)국제평화주의, (6)법치국가주의, (7)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라고 할 수 있다(권영성, 2010: 131-152; 김철수, 2008: 27-30; 정중섭, 2007: 195-228). 이와 다른 측면에서 한상범은 헌법에 정한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1)민주적 정치질서(민주공화제, 국민주권, 정당정치), (2)법치주의 행정질서(법치행정,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 (3)사회적 시장경제질서(사유재산제, 사회적

시장경제), (4)평화와 공존·협력의 국제 질서(침략전쟁 부인, 국제법의 준수, 평화통일 지향) 등으로 제시하였다(한상범, 2008: 87-102).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적인 사회 질서로 채택하여 복지,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각 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을 종합해 정리하면, 자유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복지국가, 평화 통일, 국제 평화, 사회 정의, 자유, 기본권(인권), 의무와 책임 등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박상준, 2013b: 71).

이러한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헌법교육이다. 이러한 헌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교육의 내용은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적 사고능력, 헌법적 가치와 태도, 헌법의 실천과 참여 4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박상준, 2013b: 72,80-84). 초·중등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에 구현된 기본 정신과 가치, 헌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능력, 헌법적 문제 해결의 실천과 참여 등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헌법교육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의 행사와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헌법 관련 지식과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기초하여 헌법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초·중등학교 사회과의 헌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과 요소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내용 영역	내용 요소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의 개념과 의의,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 기본권과 의무, 통치구조,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기능 등
헌법적 사고기능	헌법적 지식의 탐구, 헌법적 가치의 탐구, 헌법적 문제해결능력,

	헌법적 추론능력 등
헌법적 가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적 가치: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국제 평화, 기본권 존중, 복지국가, 사회적 시장경제, 자유, 평등, 정의, 인권, 책임 등 헌법적 태도: 헌법 수호 의지, 헌법의 정신과 가치의 실현 태도, 헌법 실천 태도, 타인의 인권 보호 태도, 자기 책임의 이행 태도 등
헌법적 문제 해결의 실천과 참여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헌법의 정신과 가치의 실천, 헌법 수호를 위한 실천과 참여, 타인의 인권 보호 실천, 자기 책임의 이행 등

Ⅲ.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과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원리로 적용된 것이 주로 환경확대법과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이다(박상준, 2011: 106-129; 2013a: 88-101). 두 가지 원리를 간략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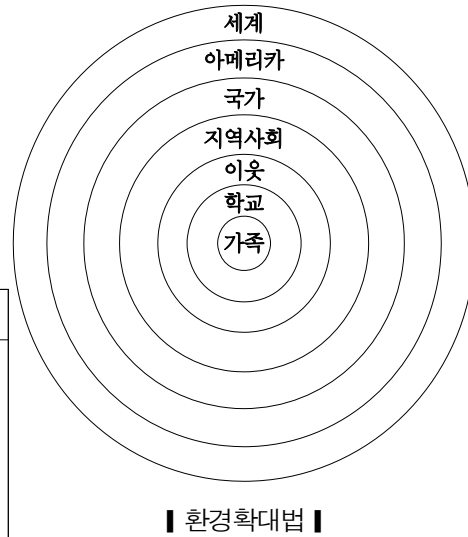
1. 환경 확대법

환경확대법¹⁾(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은 1940년대 초반 P.R. Hanna가 사회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접근법이다(박상준, 2011: 107-111; 2013: 88-91). Hanna는 사회과의 범위와 계열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이 경험하는 공동체 또는 지역(공간)을 점차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처음에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공동체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Banks, 1990: 10; Duplass, 2004: 20-21).

한나의 환경확대법 또는 공동체 확대법은 가족, 학교, 이웃, 주, 국가, 세계 공동체 순으로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공간)의 범위를 동심원적으로 확대시키며 사회과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Banks, 1990: 10-11, 47, 인용):

<표 2> 환경확대법에 의한 내용 구성

학년	공간의 확장 및 관련 내용
1	아동의 <u>가족</u> 공동체
2	아동의 <u>학교</u>
3	아동의 <u>이웃</u>
4	아동의 <u>지역사회</u>
5	아동의 <u>주(시·도)</u> 공동체
6	아동의 <u>주의 연합</u> 공동체
7	<u>연방국가</u> 공동체
8	미국과 <u>북아메리카</u> 공동체
9	미국과 <u>대서양</u> 공동체
10	미국과 <u>태평양</u> 공동체
11	미국과 <u>세계</u> 공동체



이러한 환경확대법은 학생들이 경험한 친숙한 공동체(지역)와 사회생활부터 배워야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즉,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활방식, 역사, 제도 등을 잘 이해하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가정, 학교, 이웃, 지역사회에서 출발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확대법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먼저 가정, 학교, 이웃,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모습과 제도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중학생은 지역의 연합체(북부·중부·남부 지역), 자기 나라와 주변 대륙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 다음 고등학생은 공동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자기 나라와 세계 공동체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최근 환경확대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과의 범위와 계열

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환경확대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과의 범위와 계열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2.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법

사회과에서 민주 시민의 자질, 즉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박상준, 2011: 118-129; 2013a: 94-101). 여기서는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적용된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은 시민성의 육성과 관련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중요한 주제 또는 개념을 추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미국사회과협회(NCSS)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과의 범위와 계열을 조직하는 표준으로서 10가지 주제 스트랜드를 제시하였다(NCSS, 1994; 2001: 4). 10가지 주제 스트랜드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10가지 주제들은 ‘학제적 특성’을 지닌다. 이 주제들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선택된 공통적 주제와 개념들이다. 사회과교육자들은 10가지 주제에 기초하여 사회과학, 역사, 지리, 기타 학문 분야에서 도출된 구체적 내용들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둘째, 10가지 주제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학생들이 ‘Ⅰ. 문화’를 이해하려면, ‘Ⅱ. 시간, 연속성, 변화’ 그리고 ‘Ⅲ. 인간, 장소, 환경’, ‘Ⅴ. 개인, 집단, 제도’, ‘Ⅸ. 국제 관계’등과 연관시켜 파악해야 한다(NCSS, 2001: 4).

미국사회과협회는 10가지 주제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사회과의 범위와 계열을 통합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표준’(the social studies standards)을 제시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표준은 (1)10가지 주제 스트랜드를 활용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회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본틀로서 작동하고, (2)모든 학생에게 본질적인 지식, 사고과정, 태도와 관련된 행위기대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과 교육과정을 정하는 안내지침으로 작용하고, (3)학생이 행위기대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하는데 안내가 되는 교실활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NCSS, 2001: 3).

사회과에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사회과의 성격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지리, 역사 및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제도와 기능, 사회문제와 가치, 연구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조직하여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¹⁾

IV. 초등 사회과에서 헌법교육 단원의 구성 방향

1. 2015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의 기본 원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에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각 학년별로 학생이 경험하는 지역 또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조직하였다. 마찬가지로 2015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과 환경확대법에 따라 구성되었다.

2014. 8. 21.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5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는 4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공청회 자료집, 2014b: 15).

- ① ‘주제 중심의 통합’ 대단원으로 재구성한다.
- ② 학년간 교육과정은 ‘환경확대법’을 유지하여 구성한다.
- ③ 5학년 1학기에 역사를 배치하고 ‘문화사, 생활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1)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과의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각 교과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실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3~6학년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 단원별로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사회의 학습량을 20% 이상 감축하여 교사의 내용 재구성의 자유를 부여한다.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는 주제 중심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대단원과 중단원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사회과는 3학년에서 ‘고장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고장의 역사’, ‘고장의 생활모습의 변화’, ‘가족의 변화’를, 4학년에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지역의 역사’, ‘도시와 촌락의 생활모습’, ‘사회변화와 다양성’을, 5학년에서 ‘우리 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인권 존중과정의 사회’, ‘우리나라의 역사’를, 6학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지구촌의 갈등과 협력’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사회과는 각 학년별로 학생이 경험하는 지역 또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환경확대법에 따라 구성된다. 사회과의 교육과정은 3학년(고장)→4학년(지역)→5학년(우리나라)→6학년(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으로 공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 즉, 3학년은 ‘고장’(시·군 단위)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역사 등으로, 4학년은 ‘지역’(시·도 단위)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 도시와 촌락의 생활 모습,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의 경제활동 등으로, 5학년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우리 헌법의 기본권, 우리나라의 역사 등으로, 6학년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생활, 및 각 ‘대륙과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지구촌의 갈등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초등학교 사회과는 학기 당 대단원의 수를 감축하여 학습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교사의 내용 재구성의 자유를 부여하도록 구성된다. 기존의 사회과는 각 학년별 학기당 3~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개정 중인 초등 사회과는 3, 4학년은 한 학기당 1개 대단원으로, 5, 6학년은 한 학기당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개정하고 있는 2015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청회 자료집, 2014b: 16-19).

<표 3> 3학년: 고장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학년	대단원	중단원	내용 구성 요소
3-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삶이 이루어지는 바탕 ② 고장의 인물과 유적지 ③ 삶을 이어주는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환경과 생활모습(지리) ▪ 고장의 인물과 문화재(역사) ▪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과 일상생활(지리+일사)
3-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① 계절 변화에 따른 삶의 모습 ②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③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계절 변화와 의식주 생활모습(지리) ▪ 생활 도구와 세시풍속 등 고장의 생활모습의 비교(역사) ▪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역사+일사)

<표 4> 4학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학년	대단원	중단원	내용 구성 요소
4-1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범위 ②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③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역 기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위치, 범위, 중심지의 이해(지리) ▪ 지명, 전설, 유물과 유적지를 통한 지역의 이해(역사) ▪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이해 및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일사)
4-2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다양한 삶의 무대 ②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③ 사회 변화 양상과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촌락의 특징 및 상호 의존(지리) ▪ 지역의 경제활동(생산, 소비, 시장) 및 지역 간 물자의 교환의 이해(일사+지리) ▪ 사회 변화의 양상(고령화, 정보화, 세계화)과 문화 다양성의 존중(일사)

<표 5> 5학년 :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환경과 사회생활, 우리나라의 역사

학년	대단원	중단원	내용 구성 요소
5-1-1	국토와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② 국토의 자연환경 ③ 국토의 인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위치와 지역 구분 ▪ 국토의 자연환경 ▪ 국토의 인문환경(인구, 도시, 교통, 산)

8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업)
5-1-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을 존중하는 삶 ② 헌법과 기본권 ③ 법의 의미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신분 제도, 여성과 남성의 삶 비교, 평등한 삶의 이해 ▪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 헌법의 의미와 역할, 기본권과 의무 ▪ 법의 의미와 기능,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 기능
5-2-1	조상들의 삶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리와 조상의 삶 ② 고대 사회의 생활과 문화 ③ 고려 사회의 생활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문화의 변화 이해하기 ▪ 고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인물, 생활, 문화 이해하기 ▪ 인물과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고려 사회 이해하기
5-2-2	새로운 변화 속의 조상과 오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선 전기 사회의 생활과 문화 ② 조선 후기 사회의 생활과 문화 ③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사회 이해하기 ▪ 인물,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 이해하기 ▪ 서양 문물의 수용이 가져온 생활과 문화의 변화 이해하기 ▪ 식민지 경험이 가져온 생활과 문화의 변화 이해하기

<표 6> 6학년: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지구촌

학년	대단원	중단원	내용 구성 요소
6-1-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② 민주주의 원리 ③ 우리나라 정부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의 역사와 의의 ▪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 국회, 행정부, 법원의 기능
6-1-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생활의 변화와 합리적 선택 ②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③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생활의 변화 비교 및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와 특징 ▪ 세계화로 인한 경제생활의 변화와 경제 교류
6-2-1	세계의 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양과 대륙의 위치와 지역 구분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위치와 영토 모

	나라들	②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③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습 ▪ 세계의 기후대와 특징 및 의식주 생활 ▪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의 특징과 국제 관계 및 교류
6-2-2	지구촌의 갈등과 협력	① 세계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 ②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③ 미래에도 존재해야 할 지구	▪ 민족, 자원, 종교, 환경으로 인한 국제 갈등의 현황과 해결 방안 ▪ 세계 평화의 중요성과 위협 요인 ▪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세계시민의 자세

2.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

1) '5-1-2 단원'과 '6-1-1 단원'의 상호 교체

2015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사회의 내용 체계와 요소는 기본적으로 '환경확대법'과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성 원리와 방향에 의거하여, 헌법교육 관련 단원 및 내용은 환경(공간)의 확대에 대응하여 각 학년별 공간 및 그에 따른 사회 생활의 모습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청회 자료집에 제시된 초등학교 3~6학년의 사회과 내용 체계와 요소는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다.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5학년 1단원에서 우리나라 국토의 위치, 자연환경, 인문환경을 다루고 있는데, 2단원에서 갑자기 '인권 존중과 정의 사회' 주제를 다루고 있다. 5-1-2 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는 5-1-1 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및 5-2-1 단원 '조상들의 삶과 문화', 5-2-2 단원 '새로운 변화' 주제 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한 4학년의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과 상호 연계하여 공간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4학년 1학기 4-1-1단원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주민 자치'주제와 와 연계하려면, 5학년 1학기 5-1-2 단원에서는 '국가'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방식을 이해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4-1-1단원에서 '지역'(시·도 단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생활

8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의 모습으로 구성되었으므로, 5-1-2단원에서는 ‘국가’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정치 생활의 모습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4-1-1단원의 지역 범위와 연계하여 5-1-2단원에서는 “왜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는가?, 국가의 질서 유지하기 위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민주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가?,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회, 행정부, 법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에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과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5-1-2 단원에서 ‘민주정치와 정부형태’ 관련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6-1-1 단원에서 민주정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규정되고, 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헌법의 의의와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환경확대법과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에 적합하다.

요약하면, 환경확대법과 주제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고려할 때, 2014. 8. 21. 공청회에서 제안된 헌법교육 관련 단원은 5-1-2 단원과 6-1-1 단원을 아래와 같이 서로 교체하고, 내용 요소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표 7> 5학년 사회과 내용 요소

공청회안			수정안		
학년	대단원	중단원	학년	대단원	중단원
5-1-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① 인권을 존중하는 삶 ② 헌법과 기본권 ③ 법의 의미와 역할	5-1-2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①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② 민주주의 기본 원리 ③ 정부의 권한과 역할

<표 8> 6학년 사회과 내용 요소

공청회안			수정안		
학년	대단원	중단원	학년	대단원	중단원
6-1-1	우리	① 민주주의 발전과	6-1-1	헌법의	① 법의 중요성과 역할

	나라의 정치 발전	시민 참여 ② 민주주의 원리 ③ 우리나라 정부 형태		준수와 인권 보호	② 헌법과 인권의 보장 ③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
--	-----------	------------------------------------	--	-----------	-------------------------------

2)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제목 및 내용 요소의 재구성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은 주로 ‘우리나라의 정치’ 주제에서 민주정치, 법, 인권, 책임(의무) 등의 하위 주제에서 다루어진다. 헌법교육 관련 내용을 어느 학년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치, 법, 인권, 책임(의무) 등의 주제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이유와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만든다. 법률 중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 정부의 형태와 기능을 정하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장치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초등학교 ‘헌법교육’ 관련 단원은 ‘법의 의미와 역할’, ‘헌법의 의미와 기능’, ‘헌법의 의미와 인권 보호 장치 기능’, ‘헌상 기본적 인권의 내용’,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로서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책임과 의무’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법교육과정 특별위원회(2014b: 1-2)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헌법교육 과정 재구조화안>에서도 ‘민주정치’ 관련 내용을 먼저 다루고, 민주정치 틀 속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 ‘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헌법’, ‘헌법 상 기본적 인권의 내용’,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법교육과정 특별위원회(2014c: 9)에서 제시한 <헌법교육 학습내용의

8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계열화 방안>에서는 초등 5~6학년에서 가르치는 헌법교육의 내용으로 ‘헌법의 의미와 의의’, ‘인권의 의미와 발전 과정’, ‘헌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권, 평등’, ‘책임과 의무’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에 의거해, 6학년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제목과 내용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6학년 사회과의 내용 요소

학년	핵심질문	대단원	중단원	내용 구성	비고
6-1-1	국가생활에서 헌법이 왜 중요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헌법의 준수와 인권 보호	① 법의 중요성과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생활에서 법의 의미와 중요성 ▪ 법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 기능 	지식 가치·태도
			② 헌법과 인권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의미와 역할 ▪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과 종류(자유와 평등) ▪ 인권을 주장하기 위한 책임으로서의 의무의 중요성 	지식 지식 가치·태도
			③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인권 보장의 역사 ▪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인권 보호 노력의 중요성 	사고기능 실천·참여

V. 맺음말

앞에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헌법교육 관련 단원의 구성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지난 9월 교육부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인문·사회적 소양교육과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안을 발표하

고, 2015년 9월까지 각 교과와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 몇몇 학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회과교육 관련 교수,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회과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고 사회과교육 관련 학회, 교수, 교사 등에게 알려져 공론화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지리(국토지리, 세계지리 등), 일반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인권 등)의 여러 학문들에서 추출한 주제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몇몇 학자들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수 몇몇 학자들이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의 주제들을 어떻게 적합하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소한 1명씩 포함시켜서 초등학생의 인지적 수준, 배경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주제를 어느 범위와 깊이까지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관련 학회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 교수와 교사들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곽한영(2009).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1-28.
- 교육부 공청회 자료집(2014a).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개 토론회 자료집. 경인교대. 2014. 6.30.
- 교육부 공청회 자료집(2014b).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전남대학교. 2014. 8. 21.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고시 제2007-79.
-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 김철수(2008). 헌법개설 (제8판). 박영사.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89-102.
- 박상준(2011).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제4판). 교육과학사.
- 박상준(2013a). 사회과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박상준(2013b).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2호. pp.65-88.
- 법무부 보도자료(2013). “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2013. 5. 23.
- 법교육과정 특별위원회(2014a). “문·이과 통합형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과정과 방향에 대한 의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4.7.7.
- 법교육과정 특별위원회(2014b). “초·중·고 헌법 교육과정 재구조화(안)”. 2014.9.30.
- 법교육과정 특별위원회(2014c). “헌법교육 학습내용 계열화 방안”. (14.9.30.
- 성낙인(2013). 헌법학. 법문사.
- 오동석(2011). “학교에서 헌법실천교육의 의의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2호, pp.37-51.
- 전제철(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37권 2호.

-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2013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 6. 1.
- 정종섭(2007). 헌법학원론 (제2판). 박영사.
- 한상범(2008).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 허종렬 외(2009).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 Banks, J. A.(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4th ed. New York.: Longman.
- Duplass, J. A.(2004), *Teach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 NCSS(1994), *Expectations of Excellence: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Washington, D. 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NCSS(2001), *A Sampler of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Expectations of Excellence*, Upper Saddle River, N. J.: Merrill Prentice Hall.
- 연합뉴스, “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운다”. 2013. 5. 23.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 · 302(병합)

•• 주제 발표 3 ••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분석

[주제 발표 3]

초등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분석

이 지 혜(서울 한서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 I. 들어가는 글
- II. 헌법교육 내용과 구성요소
- III.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분석
- IV. 나오는 글
-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글

헌법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권영성, 2008: 6).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이다. 헌법에 대해 알고 헌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그 가치를 실천하는 일은 그 사회의 유지 및 존속과 개인의 행복 추구, 자아의 완성을 위해 그 사회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정상우, 2013: 18). 헌법교육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헌법적 가치 및 태도에 기초하여 헌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헌법의 기본 정신 및 가치를 실현하고 주권과 기본권을 능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상준, 2013: 69). 헌법교육은 미래의 정치적 주권자인 학생들

에게 법교육 중에서 특히 기본적인 인권과 헌법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전체철, 2005: 83).

헌법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관련된 학습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당위적 차원에서의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육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제까지의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흐름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헌법교육 내용과 구성요소

헌법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관점의 차이로 주장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본 장에서는 헌법교육 내용과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을 분석·종합하여 헌법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전체철(2005)은 사회과교육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체철, 2005: 86). 헌법은 의무 위주의 법이 아닌 권리 위주의 법이며, 헌법이 상하복종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의무위주의 법이라는 시각으로는 헌법교육이 제대로 설계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내재한 기본적 인권, 기본권 및 권력 제한규정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전체철, 2005: 88).

김현철(2009)은 헌법교육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교육이어야 한다고 보고 헌법교육은 헌법전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현철, 2009 : 95). 헌법교육에 대한 구체적 영역으로 헌법의 역사

적 합의, 입헌주의에 대한 교육, 공동체 삶의 관점에서 헌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헌법의 역사적 함의는 역사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한다. 헌법은 본질상 역사적, 정치적으로 탄생한 것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헌법의 역사는 길 것이고, 그런 만큼 미래를 위해서라도 헌법의 역사적 함의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은 법치의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법치가 정치와 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정치가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줄 있는 가능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입헌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서로 다른 개성과 선호와 이익을 가진 각자가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가치, 관용의 의미 등을 헌법교육을 통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김현철, 2009 : 96-98).

김대환과 박훈(2009)은 헌법적 원리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민주공화국 원리이라고 규정하고 헌법교육의 이념적 종착점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대환·박훈, 2009: 68). 헌법의 구성체계상 구체적인 헌법교육 내용을 민주시민교육과 기본권교육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의 기본원리 교육,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구성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법치국가 원리 등이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교육은 우리나라 정치적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교육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이해교육은 국회, 정부, 법원 등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교육으로 국가기관의 작용원리에 대한 이해의 증진 측면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를 민주주의 교육으로 보았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본권은 헌법적 효력으로 보장되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적 정의 등을 구체적인 기본권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김대환·박훈, 2009: 73-74, 77).

허종렬 외(2009)는 초등학교 헌법교육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헌법의 역사와 현주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입법부·행정

96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부·사법부의 헌법 요구 원리와 기능, 헌법재판소, 헌법과 우리 생활에 관한 것을 헌법교육의 주제로 제시하였다(허종렬 외, 2009: 82-83).

곽한영(2009)은 총론-기본권론-통치구조론의 기계적인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 헌법교육의 구조가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교육의 내용 체계 구성안을 제시하였다(곽한영, 2009: 11). 65개 전체 교육 내용 순위 중에서 상위 15개는 기본권 제한,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의 개념, 통치원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양심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사생활의 자유, 청원권, 통치작용, 법원의 지위 순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곽한영, 2009: 9-10).

오동석(2011)은 헌법교육은 헌법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헌법전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여 그 사회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현실의 권력과정을 규율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이 규범적(normative) 헌법이며, 헌법교육의 관심대상은 규범적 헌법을 향한 실천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오동석, 2011: 40-41). 헌법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리나라 헌법 역사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헌법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헌법을 실천할 것인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헌법에 반영되며, 하위 법규범과 국가권력 작용은 헌법적 기준 이상으로 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헌법교육은 인권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능동적 참여를 훈련하는 공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헌법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동석, 2011: 43).

박상준(2013)은 기존의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교육하는 민주적 가치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헌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헌법의 전문이나 전체 구조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 조항들에 반영된 민주적 가치로 해석하면 헌법교육의 핵심

은 이미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 교육과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헌법이 전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과 원리 및 기본적 가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복지국가, 평화통일, 국제평화, 사회 정의, 자유, 기본권(인권), 의무와 책임을 ‘헌법의 전문과 각 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 및 기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박상준, 2013: 71).

정상우(2013)는 헌법의 필요성, 헌법이 형성된 역사, 헌법의 목적, 헌법의 가치, 헌법적 정의, 헌법의 이념에 대한 이해 없이 헌법의 지식적 내용, 헌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의 내용, 통치기구의 지위와 권한 중심의 내용 체계로 헌법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헌법교육은 헌법적 가치 실천을 위한 헌법 실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상우, 2013: 16, 27).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의 역사적 형성, 헌법의 이념, 인권 보장, 권력분립과 통치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헌법의 역사적 형성은 과거 헌법이 탄생된 배경에 대한 이해로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헌법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의 이념에 대한 교육은 국민주권, 입헌주의 기본권의 보장, 국가구조 원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으로 이를 통해 헌법의 기본 가치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기본권 교육으로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기본권의 보호 노력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능과 가치보다는 그 의미에 따른 통치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권한과 기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보장임을 염두에 두고 권력의 분립과 통치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참여 이외에도 대의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상우, 2013: 27-29).

이광성(2013)은 헌법교육의 내용을 헌법 구조를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교육, 기본권 교육,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나누었다.

98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전체에 투영된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로써 헌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지침으로 이에 대한 교육은 우리나라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교육이다. 기본권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 구제, 보장이 포함되며,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에 대한 교육은 국회, 정부, 법원 등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교육이 내용요소로 포함된다(이광성, 2013: 108-109).

이밖에도 강경선(2012)은 헌법조문을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헌법 제정의 목적, 헌법의 역사, 헌법 수호의 과정과 의의, 앞으로의 헌법의 운영과 실현에 대해 주권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강경선, 2012: 306-307). 또한 허종렬과 정필운(2013)은 기본권에 내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가치 함양,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사회영역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에 내재한 자율성, 참여성, 비판적 복종성, 연대성이라는 가치 함양을 헌법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허종렬·정필운: 2013: 89).

이를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헌법교육 내용과 구성요소

범주	구성요소	연구자
헌법 역사	헌법의 역사적 함의	김현철(2009), 허종렬 외(2009), 오동석(2011), 강경선(2012), 정상우(2013)
헌법 이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 평화통일 추구	김대환·박훈(2009), 박상준(2013), 정상우(2013) 이광성(2013), 허종렬·정필운(2013)
기본권	기본권	전제철(2005), 김대환·박훈(2009), 허종렬 외(2009), 곽한영(2009), 박상준(2013), 정상우(2013), 이광성(2013)
	기본권 제한	허종렬 외(2009), 곽한영(2009)

통치기관	권력분립의 기능과 가치	전제철(2005), 정상우(2013)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김대환 · 박훈(2009) 허종렬 외(2009), 정상우(2013), 이광성(2013)
	국가기관의 민주적 원리	김대환 · 박훈(2009), 정상우(2013), 허종렬 외(2009), 곽한영(2009)

Ⅲ.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헌법교육 내용 분석

다음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헌법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내용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수요목기(1946-1954)

교수요목기의 6학년 '8. 우리나라의 정치'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38). 이 시기의 6학년 1학기 사회생활 교과서(1953)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수요목기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생활 6-1 (1953)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민주권 의미와 중요성
	기본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재판청구권
		사회권	교육권, 근로권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구성원리	
	국회	국회의원의 하는 일, 양원제, 입법기관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	행정기관, 국무총리와 각 부처에서 하는 일, 국무회의의 구성과 임무
법원	사법기관,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종류, 공정한 재판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이 국민 전체에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종류와 헌법에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정치가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영미, 2011: 31-34 재구성).

2. 제1차 교육과정(1955-1963)

제1차 교육과정 6학년 ‘4. 우리나라의 정치’, ‘10. 국민의 본분’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103-104, 107). 이 시기의 6학년 1학기 사회생활 교과서(1955), 6학년 1학기 사회생활 교과서(1955)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55a, 1955b).

<표 3> 제1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생활 6-1 (1955)	헌법 역사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 주체와 방법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민주권 의미와 중요성
	기타	헌법의 의미 다른 나라의 헌법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 미국, 프랑스 헌법
사회생활 6-2 (1955)	기본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

사회생활 6-1 (1955)	통치구조	표권	표권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구성원리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의 하는 일, 국회의 권한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행정부	정부의 하는 일		
법원	법원이 하는 일,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이 시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헌법의 의미와 헌법의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헌법 제정의 예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문교부, 1955a: 85-86, 130-131).

3.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제2차 교육과정 5학년 ‘1. 근로와 우리 생활’, 6학년 ‘2. 민주주의와 정치’, ‘6. 우리의 할 일’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121). 이 시기의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1966),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1966),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1966)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6a, 1966b, 1966c).

<표 4> 제2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6-1 (1966)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민주권 의미와 중요성
사회 5-1 (1966)	기본권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권	근로의 권리
사회		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10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6-2 (1966)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기본권 제한		
사회 6-1 (1966)	통치구조	통치구조 구성원리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하는 일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
		행정부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종류 정부의 하는 일
		법원	법원이 하는 일, 재판의 종류, 법원의 종류, 공정한 재판

5학년 1학기에 ‘직업과 근로’라는 소주제에서는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제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문교부, 1966a: 14-15). 또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권리를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거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문교부, 1966c: 104-107).

4.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제3차 교육과정 6학년 ‘4. 민주주의와 우리의 생활’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149). 이 시기의 6학년 사회 교과서(1979)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79).

<표 5> 제3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6 (1979)	헌법 역사	헌법의 개정	유신헌법의 의의
	헌법 이념	국민주권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
	기본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 받을 권리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통치구조 구성원리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하는 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임기, 통일주체국민회의 하는 일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
		행정부	국무총리와 각 부처에서 하는 일, 국무회의의 구성과 임무
		법원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종류,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을 통하여 일명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유신헌법의 특징으로는 기본권 보장 약화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의 권한 강화 등이다(권영성, 2008: 114-115).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대통령의 권한 강화 필요성,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필요성, 긴급조치권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제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유신헌법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력을 길러 국토를 통일하고,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유신헌법의 의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문교부, 1979: 40).

5.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제4차 교육과정 5학년 ‘1. 국가와 국민 생활’, 6학년 ‘4. 민주주의와 우리의 생활’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165, 170). 이 시기의 5학년(1983), 6학년(1982) 사회 교과서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3, 1982).

<표 6> 제4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5-1 (1983)	헌법 이념	평화통일	민족통일
		복지국가	민주복지 국가 건설
	기본권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청구권	재판 청구권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권	
사회 6-1 (1982)	헌법 역사	헌법개정	1980년 개정 헌법의 의의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민주권 의미
		평화통일	평화통일의 위한 노력
		복지국가	민주복지 국가 건설
	기본권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하는 일, 국회의 구성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 지위와 권한, 하는 일
		행정부	국무회의와 각 부처에서 하는 일
법원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의 종류, 공정한 재판	

6학년 1학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단원을 통하여 1980년 개정 헌법을 통하여 헌법의 역사와 헌법의 이념에 대하여 제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었다.

6.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제5차 교육과정 5학년 ‘1. 국가와 국민 생활’, 6학년 ‘4. 민주주의와 우리의 생활’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184, 188). 이 시기의 5학년(1990), 6학년(1990) 사회 교과서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90a, 1990b).

<표 7> 제5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5-1 (1990)	헌법 이념	국민주권	헌법 1조 2항
		국제평화주의	세계평화와 인류행복
		복지국가	국민생활 향상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중요성
	기본권	자유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
		청구권	재판 청구권, 청원권
		참정권	공무담임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기본권 제한		
사회 6-1 (1990)	헌법 역사	헌법의 역사	헌법의 제정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가의 주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	자유권	거주 이전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청구권	청원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 5-1 (1990)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사회 6-1 (1990)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의원의 구성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
	행정부	국무회의와 각 부처에서 하는 일, 국무회의의 구성과 임무
	법원	법원의 종류와 하는 일,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5학년과 (1)‘국가의 중요성’ 단원에 국제평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2)‘나라의 주인’ 단원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등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문교부, 1990a: 14, 16). 또한 6학년의 (1)‘대한민국 정부와 헌법’ 단원에서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제도, 피선거권,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문교부, 1990b: 125-126).

7.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제6차 교육과정 5학년 ‘4.자율적인 시민생활’, 6학년 ‘3.민주국가로의 발전’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204, 206). 이 시기의 5학년(1997), 6학년(1997) 사회 교과서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7a, 1997b).

<표 8> 제6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5-2 (1997)	기본권	자유권	자유권
		평등권	평등권
		참정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기본권 제한	
사회 6-2 (1997)	헌법 역사	헌법의 제정	헌법의 제정과 공포

	헌법 이념	헌법전문	제헌 국회 헌법전문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기본권	사회권	환경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청원권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 국회의원의 임기와 하는 일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
		행정부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구성, 각 부의 종류와 하는 일
		법원	법원의 종류와 하는 일,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이 시기에는 헌법의 제정과 공포에 대해 다루면서 제헌 국회의 헌법 전문을 그대로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b: 10).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교육부, 1997b: 43).

8.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제7차 교육과정 6학년 '3.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00: 568). 이 시기의 6학년 사회 교과서(2008)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표 9>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6-2 (2008)	기본권	인권	인권의 보호
		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정권	선거권
		청구권	청원권

	통치구조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 선출과정, 국회에서 하는 일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하는 일
		행정부	국무총리와 각 장관이 하는 일, 각 부처에서 하는 일, 국무회의의 구성과 임무
법원	법원의 종류와 하는 일,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이 시기에는 ‘보호해야 할 인권’ 단원에서 인권의 의미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단원은 기본권에 초점을 둔 인권의 내용보다는 인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한정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54-61).

9.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12)

2007 개정 교육과정 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358-360). 이 시기의 6학년 사회 교과서(2011)의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10> 2007 개정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구체적 내용
사회 6-2 (2011)	헌법 이념	국민주권	국가의 주권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복지국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
		국제평화	세계평화 유지와 인류발전
		평화통일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
	기타	헌법의 개념	헌법의 의미,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내용	헌법의 구조
	기본권	인권	인권의 의미와 발달, 인권 보호,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구권	청원권
		기본권 제한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국회의원 선출과 국회의원 의무, 국회에서 하는 일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와 하는 일
		행정부	국무총리의 하는 일, 행정 각부에서 하는 일
법원		법원의 하는 일, 재판의 종류, 공정한 재판	

이시기에는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아래 ‘최고의 법, 헌법’ 이라는 단원에서 헌법의 의미, 중요성, 구조,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역할, 헌법 제정, 헌법 개정시의 국민투표 실시 등 헌법에 대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2-33).

10. 2012 개정 교육과정(2012-)

2012 개정 교육과정 5-6학년 ‘4.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치구조, 기본권과 의무 내용을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헌법의 핵심적 내용 부분과 기본적 인권 부분에서 반복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연권으로서의 인권보다는 기본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권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go.kr/nation.kri.org4.inventoryList.do>). 201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201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헌법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2012 개정 교육과정 헌법교육 내용

구분	범주	구성요소	내용요소
사회	기본권	인권	인권 존중, 인권의 중요성

110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5-6		자유권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평등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참정권	선거권
	통치구조	통치구조	권력분립
		국회	구조와 기능
		행정부	구조와 기능
		법원	구조와 기능

교수요목기에서부터 2012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헌법교육의 내용을 II장에서 제시한 ‘헌법교육 내용과 구성요소 구조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범주	구성요소	교수 요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2 개정
헌법 역사	헌법의 역사적 함의		●		●	●	●	●			
헌법 이념	국민주권	●	●	●	●	●	●	●	●	●	
	자유민주주의						●			●	
	복지국가					●	●			●	
	국제평화						●			●	
	평화통일 추구					●				●	
기본권	기본권	●	●	●	●	●	●	●	●	●	●
	기본권의 제한	●	●	●	●	●	●	●	●	●	
통치 기관	권력분립	●	●	●	●	●	●	●	●	●	●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	●	●	●	●	●	●	●	●	●
	국가기관의 민주적 원리									●	

헌법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 개정 주체와 방법, 1980년 개정 헌법 등과 같은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헌법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3차 교육과정의 헌법관련 내용은 유신헌법의 정당화 수단에 불과하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배경, 훼손된 헌법을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 등 헌법의 역사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의 이념과 관련하여 모든 교육과정에 ‘국민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국민주권을 제외한 헌법의 다른 이념들은 각각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의 이념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질서에 관한 것으로 헌법의 정신에 밑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각각의 헌법이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내용이 다각도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전 교육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의 목적에 대한 이해보다는 헌법상 제시된 기본권의 종류와 뜻에 대한 열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내용 제시가 부족하다.

통치기관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권력분립과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민주적 원리에 대한 내용 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 기관의 목적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나오는 글

헌법교육은 법적 사고와 건전한 법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교육의 법교육 영역의 핵심이다(곽한영, 2009: 19). 그러나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헌법의 역사적 함의,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주의, 국제 평화주의, 평화통일 추구와 같은 헌법의 이념,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 권력분립,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국가기관의 민주적 원리로 구성된 통치기관에 관한 것을 헌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12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수요목기부터 201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다루어진 헌법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헌법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학습보다는 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단편적 내용 위주로 헌법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헌법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도 국민주권주의에 치중되어 있으며, 헌법의 이념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헌법이념 개념 자체에 대한 사전적 의미 해석에 한정하여 헌법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권에 관한 내용 역시 기본권 보장 목적보다는 기본권의 종류와 뜻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내용 제시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통치기관에 관한 내용은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의 민주적 원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 헌법의 역사, 헌법의 이념, 기본권, 통치구조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단순 나열식의 서술에서 벗어나 헌법의 내용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가치에 중점을 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교육 내용과 관련한 단편적 사실 위주가 아닌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 수준에 적합한 구체화된 사례 중심으로 헌법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적 지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헌법 내용에 기반이 되는 정신과 가치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 교육방법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a). 사회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200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2011). 사회 6-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7a). 사회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97b). 사회 5-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기준. 교육부.
- 강경선(2012).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법학」, 제50호, pp.305-341.
- 곽한영(2009).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1-28.
- 권영미(2011). 초등사회과 헌법교육의 내용 변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권영석(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대한·박훈(2009).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57-88.
- 김명정(2010).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법교육연구」, 제5권 1호, pp.47-68.
- 김현철(2006).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pp.89-102.
- 문교부(1955a).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55b). 사회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66a). 사회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66b).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66c). 사회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79).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79).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82).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83). 사회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14 ·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_____(1990a). 사회 5-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_____(1990b). 사회 6-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박상준(2013). “헌법교육의 내용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2호, pp.65-88.

박용조(2005).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변천”. 「사회과교육연구」, 제12권 1호, pp.131-154.

오동석(2011). “학교에서 헌법실천교육의 의의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4 2호, pp.37-51.

이광성(2014). “헌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교육연구」, 제9권 2호, pp.283-316.

이대성(2011). “미국 헌법교육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2권 3호, pp.105-129.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3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6.1. pp.15-35.

전제철(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37권 2호, pp.81-106.

_____(2006).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2호, pp.85-121.

허종렬 외(2009).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대법교육연구소.

허종렬·정필운(2013). “헌법의 정신과 가치 함양을 위한 학교 법교육과정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3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6.1. pp.39-93.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go.kr>

•• 주제 발표 4 ••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법으로
사례기반학습**

[주제 발표 4]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기반학습

박 형 근(서울 화일초등학교 교사)

- I. 서론
 - II. 초등 헌법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 III. 초등 헌법교육의 방법론과 사례기반학습
 - IV. 초등 헌법교육 사례기반학습 수업모형 설계
 - V. 결론
- * 참고문헌

I. 서론

법교육의 시작은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아닌 법의 존재와 그 필요성,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그 가치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한 영역인 헌법교육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과 중등 모두 법교육에 있어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교육은 이론과 지식 중심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이 지니는 위상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헌법의 본질적 이해 없이 피상적인 내용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교과서 상의 헌법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 전문의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왜 공동의 약속으로서의 헌법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빠져있다. 또한 헌법교육의 내용은 6학년 2학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방법 면에서는 사례중심이 아닌 강의중심의 헌법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교육이 왜 초등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초등학생은 발달단계상 사고의 유연성과 학습 전이력이 높고, 기본생활습관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덕목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체득할수록 정형화된 가치가 아닌, 내가 왜 이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에서는 경험적인 학습을 활용하여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

둘째로 법교육의 학습 계열 상 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은 민법이나 형법의 이해에 앞서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고,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이 법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법적 갈등을 해결할 때 법적 판단 준거로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교육의 시작은 헌법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민법, 형법 등의 세부 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초등학생들은 국민이 동의하여 만든 헌법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왜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준법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애국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헌법이 사회통합의 기능과 역할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단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헌법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학습하기에 효과적인 학습 소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헌법교육의 성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사례기반학습의 새로운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등 헌법교육의 성격과 문제점

1. 초등 헌법교육의 성격

헌법교육은 일반적인 법교육의 성격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넓게 보자면 당연히 법교육의 일부이다. 따라서 헌법교육 역시 법학, 특히 헌법학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관계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비판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교육은 헌법전문가를 길러내는 법학교육의 일부인 것은 아니며, 민주시민교육의 한 방편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한다(허종렬 외, 2009, p. i).

따라서 초등학교의 헌법교육은 헌법의 내용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헌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내용 측면에서 헌법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나 가치를 학습하는 가치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먼저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교육에서의 법교육은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이 되는 헌법에 대한 가치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교육은 특히 인권교육과 많은 부분 겹친다. 그것은 헌법이 바로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교육을 하면 그것은 동시에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된다. 양자의 관계는 서로 포섭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종래 우리나라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준별하여 양자가 목적을 달리 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법’ 또는 ‘인권’만의 교육보다는 ‘법과 인권’을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헌법교육은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허종렬 외, 2009, p. ii).

Mcbee, Robin Haskeli(1994)는 법교육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네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 법률과 헌법의 지식을 넓히고 그것과의 개인적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들고, 수업에서 Virginia Constitution과 같은 원 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허종렬 외, 2009, pp. 8-10).

1) 인권보장적 관점

인권보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한 인권교육은 나의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이것이 타인의 인권에 대하여 존중할 자신의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는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의존한다(Jerrold R. Coombs, etc., 1990, p. 78).

2) 민주시민교육적 관점

민주시민교육적 관점 역시 헌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교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미국도 그 나라의 민주적 신념은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적법절차와 평등 보장(due Process of law and equal protection),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와 같은 실천적 사항 외에 정의, 평등, 자유, 책임성, 다양성, 기본적 인권의 존중,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June Tyler & David L. Manning, 1981, p. 5).

요컨대, 법교육 가운데에서도 특히 헌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입헌적 민주주의 때문(constitutional democracy)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법교육의 가장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법교육의 본질(ABA 1995)¹⁾은 법교육의 실제에서 본질적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 권력, 평등, 자유, 본질적 원리로서 시민과 사회, 정부 역할 사이의 관계, 민주적 사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 본질적 기능으로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참여 능력, 본질적 태도와 신념 가치로서 입헌적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법의 지배,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은 정부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줄 아는 정신이다.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는 구체적 법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요소로 한다. 법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 정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위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법에 관한 논리와 법에서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 사법적 결정에서의 논리 전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법률 혹은 판결 자체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바로 도덕적 문제에 관한 판단 능력과 직결된다(Jerrold R. Coombs, etc., 1990, p. 78).

3) 법치주의적 관점

법치주의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은 일반 법교육에 비하여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부분이다. 법치주의는 바로 헌법 자체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도출된다(Charles J. White III, 1975, p. 30).

헌법은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이것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만 인식할 것은 아니다.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또한 자신의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양을 접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1)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emaker.

된다.

완전한 시민정신이란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는 법적 원리를 알고 그것을 고려하며, 그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의도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의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완전한 시민정신을 획득하게 하는 데 근본적이다. 즉 완전한 시민정신은 자신의 법적인 의무를 인식하고 스스로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의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Jerrold R. Coombs, etc., 1990, p. 79).

2. 현행 초등 헌법교육의 문제점

현재 초등 법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처음 법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소극적 의미에서의 법의 특성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법이 없다면 사회가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상황 예상으로부터 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법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초등 헌법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헌법교육의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헌법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헌법교육적 기능도 약하다. 제헌절이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약하다. 이런 날을 미국처럼 대대적인 헌법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법치주의 교육의 왜곡과 미흡, 인권교육의 일관성 결여 등 내용의 왜곡과 편중성이 심하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헌법교육 내용이 6학년에 집중 편중되어 있는 점, 헌법의 내용이 골고루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헌법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교과서는 개념 설명 중심의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으며, 사례 중심의 접근이 여전히 미흡하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년의 관련 국경일이나 절기를 이용하여

헌법 관련 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4·19,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월 1일 법의 날, 어린이주간(5. 1-7), 6월 3일 세계출판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7월 17일 제헌절,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9월 15일 세계평화의 날, 10월 31일 유니세프의 아동의 날, 10월 20일 문화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 11월 9일 파시즘과 유대주의 반대의 날, 12월 3일 소비자의 날, 12월 10일 세계 인권 기념일 등이 모두 그 취지를 살리면 헌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날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날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섯째, 헌법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관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현장에서 직접 헌법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물론 각 기관들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두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형식적인 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은 헌법학의 내용 학문으로부터 주요 개념과 내용을 추출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헌법의 역사나 기본 정신보다 먼저 다루다 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 헌법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지식 전달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치구조를 다루는 내용에 앞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먼저 학습해야 하며, 타인배려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체득을 목표로 하는 헌법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헌법적 가치들은 항상 사익과 사익, 사익과 공익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헌법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가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기반학습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례학습에 대한 이론은 있으나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에 교수학습 방법이나 수업모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사례학습법 및 법교육 학습모형은 초등학생에게는 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사례학습방법이 요구된다.

Ⅲ. 초등 헌법교육 방법론과 사례기반학습

1. 생활중심, 가치중심, 사례중심의 헌법교육 방법론

1) 헌법교육 방법론의 접근 방법

법교육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법적 쟁점이나 갈등 상황에 대하여 경험주의 교육관에 기초한 실용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가치명료화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혹은 판례를 통한 법적 쟁점 토론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박형근, 2009).

첫째, 실용적 접근의 방법으로 법교육의 내용 구성과 전개 방향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접하는 생활 주변의 쟁점과 사회적 관심사 등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심 사항을 다루면서 그 합리적 해결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 스스로 생활에서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알게 되는 학생의 권리, 소비자 문제, 환경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법규 문제 등의 법적 논쟁점을 규범적인 주입식 법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하고 법적사고력을 배양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실용주의적 법교육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개념적 접근의 방법으로 이것은 가치명료화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개념인 정의, 자유, 평등, 사생활의 권리, 적법 절차,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등에 관한 가치개념들과 원리를 중심으로 법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개념 중심의 법교육 접근 방법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법적 개념이 복잡하게 되고, 그 범위와 영역은 확대된다.

셋째, 판례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 입장, 판례들을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명료화하여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나가는 방법이다. 판례중심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①법적인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고 ②법적인 문제에 대한 쟁점을 추출한 다음, ③대립되는 주장 간의 토론을 유도하고, ④사례에 대한 관련법 적용을 통하여 법

해석을 한 후, ⑤판결이유를 제시하고 판결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헌법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과 사회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로 책임감 있는 시민의 육성을 기대한다. 이러한 시민은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적 사고와 도덕적 가치관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헌법교육의 접근방법은 헌법적 개념과 가치의 명료화를 위한 개념적 접근과 학생들 경험 중심의 실용주의적 접근, 사례나 판례를 중심으로 한 판례중심 접근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헌법의 기초 개념인 인간의 존엄성, 권리와 책임, 평등, 사생활의 권리, 권력, 재산, 자유, 적법 절차,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한 후에, 생활 주변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헌법교육의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전략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을 취해야 하겠지만, 치밀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초등 헌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교수학습 시 집단과 개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의재판, 모의국회, 교실에서의 헌법, 규칙이나 법규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협동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등을 이용하여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이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 조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집단 작업 활동을 많이 이용하고, 봉사

2) 미국 변호사협회의 '법교육 가이드'에서는 법교육의 교수 전략은 필수적으로 논쟁적 이슈들을 탐구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고, 교실에서의 역할 학습을 통해 법적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사법적 결정이나 선례가 되는 판례의 역할 평가와 모의재판을 통한 사법 절차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ABA,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A Guide for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Chicago: ABA, 2003), pp. 4-5).

학습, 로비활동, 개별 전문 학습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학습을 교육과정에 설정하여 학생들이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도가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에게 헌법과 헌법적인 쟁점을 가르치기 위해 실물교수법과 강의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탐구하고 심각하게 숙고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학생들이 갈등문제 속에서 법적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그러한 쟁점들을 성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고차원적 사고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수법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헌법교육을 장려하고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은 권위, 정의 그리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예비교육을 시킬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는 또 다른 우수한 교육수단이 될 수 있다. 미디어는 시민들이 중요한 헌법 관련 쟁점에 주목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사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헌법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헌법과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중요한 비판적 사고 기술(skills)을 계발시키며,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태도, 신념, 가치들을 계발시킨다. 이러한 태도, 신념, 가치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고, 활동적이고 책임 있게 법치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포함한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학생이 직접 경험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이겠으나, 모든 학습내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초등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은 헌법재판소 견학,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가정헌법과 학급헌법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토론학습 등 매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어렵고 무거운 이미지의 법을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학습방법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심 체험학습으로 헌법의 본질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학습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위에서 설명한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을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헌법적 가치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는다면 사례학습법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학습법은 교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진정한 사례학습은 지식의 선정에서부터 결론 제시까지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학습내용이나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발달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학습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초등 헌법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초등학생 발달 단계상의 특징

발달 측면	학 자	해당 발달 단계 명	특징
인지 발달	Piaget	구체적 조작기 (6,7~11세)	스킴의 동화작용 지속, 안정된 인지구조의 확립, 가역성과 논리적 조작 능력 획득, 구체적인 것에 대한 탈중심화된 사고와 자아 중심성을 벗어난 문제 해결 등의 특징을 보임.
도덕적 판단	Kohlberg	인습적 도덕수준 (6~12세)	특별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함.
발달 과업	Havighurst	아동기 (6~12세)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술 습득, 성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형성 등의 특징을 보임. 양심, 도덕, 가치 척도가 발달함.
심리·사회적 발달	Erikson	규칙수행에 따른 보상과 원조 (5,6~11,12세)	친구들과의 교체, 규칙에 따른 행동 등을 배우며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보상, 원조 등을 하여 동기를 강화시켜 줌.

2.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사례기반학습

1) 사례기반학습의 정의

교육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례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례기반학습이라고 칭하나,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사례기반학습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례기반학습과 혼용되고 있는 사례연구법과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먼저, 사례연구란 사회과학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 중 하나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 등을 하나의 단위로 택하여 그 특수성을 정밀하게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사례연구법은 사례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일종이다.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은 특정한 법적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법적인 갈등 상황이나 사건 등에 관계하여 여러 가지 법적 견해와 관례를 통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의 상태가 무엇인가 탐색하고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전개 과정과 행위자들의 행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사건에 내려진 선 관례에 비추어 해결책을 찾는 훈련이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학생들은 법이론과 법적 사실을 연관시켜 총체적인 법적 사고와 법적 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례연구법에 제시되는 법적 상황에는 쟁점이 반드시 포함된다. 학생들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학설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결방법이 달라지는데, 교사는 이를 적절히 소개해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이론과 견해가 어떤 근거에서 타당한지를 명확히 하게 된다(이수화, 2005).

법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해석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기본적인 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와 아동은 사건을 확인하기 전에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고, 특정 사건과 법에 대하여 근거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한 학생은 사건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특정의

입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각각 주장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견해와 생각에 부딪히게 된다.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듣고,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은 결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사실을 분석하고, 사건에 대한 주장과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근거하여 추론과 합리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들은 실질적 법 결정과 추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된다.

반면에 사례를 활용한 사례기반학습은 D. Sale이 “사례기반학습이란 학습자에게 현실적인 당면 문제 장면으로 구성된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Ai-Choo Ong 외 2007)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Shulman(1992)은 “일반화할 수 있는 특정 사건과 상황을 가치와 연관 지어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사례기반학습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사례기반학습은 사례 자체를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과거의 경험, 특히 과거에 그 문제 상황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도록 돕는다(임영택, 2009).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또한 Nucci(2001)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습영역에서 몰두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적 교육과정 속에서 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특별한 가치 안에서 토론과 반응을 산출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례기반학습을 통한 토의·토론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촉진하고 실생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정의를 살펴 본 바, 사례연구와 사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기반학습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초등 헌법교육에서는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상 사례연구보다는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하는 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례기반학습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실생활의 사례를 헌법적 가치와 연관지어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교육의 사례기반학습 유형³⁾

사례기반학습의 유형은 사례의 내용 영역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분야의 사례라고 해도 사례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교육 방법은 교과목의 특성이나 교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사례연구법이며, 1학년 필수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그 이외의 과목에서는 70~80% 이상을 사례연구법으로 진행한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판례들은 모두 상급법원인 항소심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례들이며, 이러한 판례에는 1심 법원 법규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소송당사자의 공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평가와 판단이 담겨져 있다. 학생들이 이런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함께 법적인 추론방식과 논쟁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판례교수법은 하버드 로스쿨의 Langdell 교수에 의해 시작되었다. Langdell은 1800년대 후반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률교과서 대신 엄선된 판례를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였으며, 법 원칙에 대한 강의 대신 문답법을 통해 법학교육을 실시하였다. 판례교수법의 목적은 판례로부터 법적 추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어떤 판결의 사건개요나 그 결론을 암기하기보다는 왜 법원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아래의 세 가지 질문과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조금

3) 이 부분의 내용은 연은경(2013)의 논문 중에서 법교육 분야의 사례기반학습 유형에 대한 내용을 재인용함을 밝힘.

바꾸면 어떠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가에 관한 가상의 질문을 통해 법적인 추론 능력을 훈련시킨다. 판례교수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상의 질문이란 “본 사건이 법정에 오기까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담당재판부가 해결해야 했던 법적인 논점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각각의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그 판단의 근거 및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법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내용과 상황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례기반학습 모형을 각기 다른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법률적 탐구모델, Cube의 법교육 수업 전략, 사례연구법, 사례연구 접근법이 있다(김종석 외, 1992). 각 모형의 특성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적 탐구모형(Oliver & Shaver, 1966)

이 모형은 Oliver와 Shaver 교수가 법적 쟁점 및 사회 정책에 관련된 학생들의 탐구와 학습을 돕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사건 소개, 문제 규명, 입장 천명, 탐색, 수정, 검증의 여섯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2> 법률적 탐구모형(Oliver & Shaver, 1966)

단계	핵심 활동	세부 내용
1	사건 소개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예화를 낭독해 주거나 어떤 가치 분쟁 사태를 묘사하는 영화 필름을 보여주거나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논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건 안에 있는 사태를 요약하거나 분석하고 분쟁 사태의 사실을 검토한다.
2	문제 규명	가치들을 특성화하고, 가치 간의 갈등 사태를 규명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천명하지는 않는다.
3	입장 천명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장의 근거를 진술한다.
4	탐색	천명된 입장을 탐색한다. 교수자들은 대질 심문하는 형태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입장에 대하여 반대 질문을 계속한다.
5	수정	천명된 입장을 재조명하고 수정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재천명하도록 한다.

6	검증	입장의 이면에 숨은 사실적 가정을 규명하고 검토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교수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극단의 경우에도 그들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	---

법률적 탐구 모형의 여섯 단계는 크게 분석 단계와 논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석 단계에서는 가치와 문제에 대한 분석이 토론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결과가 탐색을 위한 자료의 준비활동이 된다. 논증 활동은 대질심문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능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찬성이나 반대와 같은 평가적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Cube의 법교육 수업 전략

Cube는 법교육의 수업 전략을 문제 제시, 법체계 설명, 적용, 비판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이기우, 1992). 첫째,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사례를 제시하는데 활자화된 압축 사례와 함께 다양한 사례를 동시에 소개하기 위해 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둘째, 법체계 설명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법 분야의 체계를 설명하게 되는데, 법체계는 추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말이나 문자화된 교재 혹은 도표 등의 수단으로써 전달된다. 셋째, 적용 단계에서 교수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법규를 소개하고 적용 기술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관련된 사례를 토론하며, 교수자는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토론을 이끌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이미 공부한 법 분야의 법질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비판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의 유래를 살펴보고 현 사회나 개개인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고 이를 평가하게 된다.

(3)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

사례연구법은 특정한 법적 사건 즉, 법적인 갈등상황이나 사건 등에 관계하는 여러 가지 법적 견해와 판례에 초점을 맞추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규명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이 방

법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전개과정과 행위자들의 행동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와 비슷한 사건에서 내려진 선 판례에 비추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최종고, 1995). 사례연구법은 사례의 인식, 쟁점 규명, 주장 확인, 판결 도출, 이유 제시, 시사점 도출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사례연구법은 법 이론과 사실 판단을 연결시켜 총체적인 법적 사고와 법적 추론을 하는 훈련방법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의 분석에서 쟁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과 이론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소개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기가 취한 이론과 견해가 어떤 근거에서 타당한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사례연구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 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응용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Charles J. White III, 1975).

(4)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

사례연구법이 법적 사고 및 추론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갈등 상황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례연구 접근법은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여러 개의 유사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법적 절차나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례연구 접근법은 법적 판결이나 법 제정을 이끌어 냈던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여러 개의 비슷한 사례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 접근법은 여덟 단계로 진행이 된다. 첫째, 학생들에게 문제 사건이 발생된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리고 과정을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안과 관련 사건을 제시한다. 둘째, 사건 당시 출판한 신문, 잡지의 기사를 읽도록 한다. 셋째, 당시 의회 회의록을 발췌하여 보도록 한다. 넷째, 요약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다. 다섯째, 법률 검토 후 발표하도록 한다. 여섯째,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한다. 일곱째, 발생한 문제, 제기된 주장, 법원의 결정을 보고한다. 여덟째, 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며 토론을 한다. 이때 법의 본질과 역할, 입법자와 여론과 입법과의 관

계, 법원의 본질과 역할, 정보의 동시적이고 역사적인 자원으로서 신문과 잡지의 신뢰성, 위기의 시대에서의 법률 제정 등을 토론한다. 법률적인 문제 갈등 상황을 포함하는 사례연구 접근법은 법이 통과되었던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찰하거나 조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법적 절차나 특별한 실체법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Naylor, 1977).

IV. 초등 헌법교육 사례기반학습 수업모형 설계

1.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관에 근거한 사례기반학습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1980년대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기존의 행동주의, 인지주의에서의 검증된 객관적인 지식과는 달리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수행능력, 반성적 사고의 증진을 목표로 학습자를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자로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활동을 강조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교육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협상하고, 자신의 지식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학습(project-based learning)이다.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산물이다. 기존의 사회과 학습에서 관례학습과 비교해 본다면 사회적 지식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거와 자신의 지식을 함께 구성해 가며 그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결국 학습이란 의미 있는 경험을 토대로 실제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은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일련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구성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전 지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 학생 자신의 지식에 대해 인지적 불균형이 생길 때 서로에게 질문하고, 교수적 도움(scaffolding)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은 사례기반학습을 통해서, 법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예를 다각도로 해석해 보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법이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개인의 생각을 단순히 나열하는 차원이 아닌, 실제로 법적 갈등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공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사고과정과 참여라는 장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법적 해석과 함께 토론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 된다. 결국 법적 소양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사고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 학생의 인식 수준과는 다른 성인의 그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며, 이는 대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게 어떤 지식이나 가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개념, 서로 다른 생각을 발문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고, 공동의 견해를 나누면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의 맥락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회 참여기능은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공동 작업 및 토의와 토론에 참여하고 그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과 실천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수업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

부, 2010).

초등학생은 언어와 사고의 수준에 있어서 성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법의 내용을 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예로 활용하면 보다 친숙한 의미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다. 사회과에서 말하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의미를 암기하는 식에서 그치고 만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갈등상황이나 지식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쉬운 사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수업에 이용해야 한다. 결국 수업이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는 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교사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사례학습을 한다고 해도 또다시 지식위주의 전달식 강의로 치우치게 된다.

내가 느끼고, 생각해 보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않은 지식은 자신만의 지식이 될 수 없다. 초등학생은 발달단계 상 논리적 사고, 종합적 사고가 정교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발문 역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써 제시해야 한다. 교사가 어떤 정해진 답을 유도해 내는 발문은 의미가 없다. 학생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문이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와 같다. 흥미와 동기유발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그 효과가 크다. 나와 관련된 문제, 내가 생각해 보았던 문제가 수업 상황에서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느낀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사고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 법교육에서 사례기반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예로 자유라는 가치를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초등학교 저, 중학년의 경우 자유의 의미를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는 학생이 보이기 시작한다. 고학년의 경우 개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것을 내면화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사례기반학습에서 학생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론적 내용으로 배우고 사례에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례를 통해 해당 가치의 개념 정의를 추출하고 왜 그 가치를 나와 상대방이 함께 존중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교사는 저학년의 경우 양질의 사례를 제공하며, 개방적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비계설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중·고학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함께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들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자기주도적 학습 원리에 근거한 사례기반학습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학습자의 배우려고 하는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성은 인생을 걸쳐서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습자는 타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배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인 요구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아실현이나 자기만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계속적으로 학습하려는 이 자발적인 역동성을 교육 활동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김매희, 1993).

Knowles(1975)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개인이 술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시행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즉,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으로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제 일차적인 책임을 학습자가 맡는 학습 과정이라고 보았다.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란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처럼 수업의 주도권

을 학생이 가지고 자신의 선행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교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동료 학습 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는 모든 권한을 학생에게 일임하는 자율학습과는 다르다. 교사는 최소한 역할로서 학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사례기반학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례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목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주도가 되는 학습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나 사례를 선정,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어려움과 애매함을 알게 되고, 탐구지향적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교사-학생 간, 상대방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준다. 결국 이것은 참여의 주체로서의 학습자,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수업을 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문제를 더 깊게 생각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의 정착은 탐구능력, 문제해결기능, 고차원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학생 스스로가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를 수립하면서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학생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3. 초등 헌법교육 사례기반학습의 교수학습 과정

기존의 사례연구방법의 수업모형으로써 제시된 법률적 탐구모형(Oliver & Shaver, 1966), Cube의 법교육적 수업 전략,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모두 기본적인 법지식 및 법체계를 알고 있어야만 그 수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먼저 법률적 탐구모형(Oliver & Shaver, 1966)은 가치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 대질신문을 하거나 입장의 이면에 숨은 사실적 가정을 규명한다는 점이 초등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Cube의 법교육적 수업 전략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비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청각자료의 활용면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부한 법분야의 법질서를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는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은 선판례에 비추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은 관련 법률안과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는 절차의 수준이 중등학생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용 맞춤형 사례기반학습 수업모형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례학습방법은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사가 수업을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개발된 수업모형이 없어서, 실제로 법교육을 하는 데 있어 사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의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사례기반학습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가치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며, 가치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업을 근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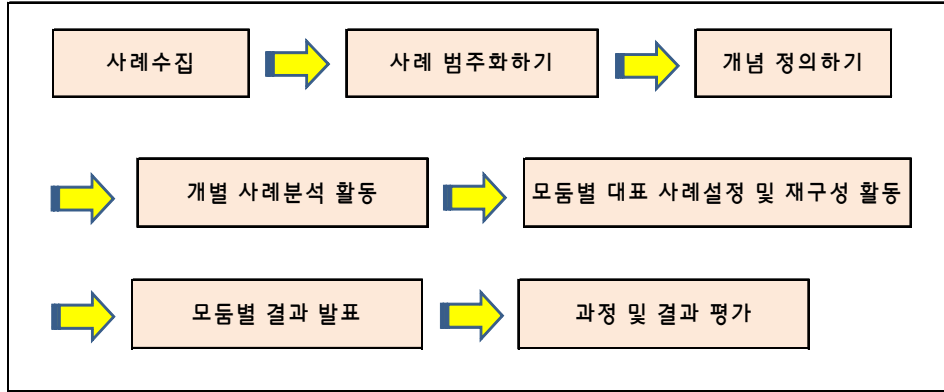
가치 자체는 초등학생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생활 속의 사례를 학생들이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할 수

있다.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관련 자료들에서 사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학년에서는 직접 경험해 보았던 일, 고학년의 경우는 직접 경험해 보았던 일 뿐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자료를 읽고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까지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일을 사례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 자신과 관련 있는 문제를 실제로 수업에서 다루었을 때 학습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례 수집에서부터 학생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례를 선정하게 되면,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 수준이 무의식중에 사례에 녹아들어 학생들에게 오히려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은 학생들의 언어와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른 것이며, 이는 학습과정에서 학습목표를 달성했을 때 학습 전 이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 학생들이 사례를 수집할 때에는 현재와 관련성이 높은 것, 폭넓은 근거에 따라 토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함을 교사가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토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결국 질문과 답을 하는 주체 역시 학생이 된다는 점은 진정한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교사는 최소한의 안내 및 방향을 정립해 주는 관찰자, 기록자 정도만으로 그 역할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성인인 교사가 학습에 개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학생이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초등학생에게 맞는 새로운 사례기반학습 수업모형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 중심의 초등 헌법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교수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사례기반학습 교수학습과정



1) 사례 수집

학습목표에 따라 주제와 관련된 학습 개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사례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목표와 관련된 개념이 실제 쓰이는 구체적으로 상황만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헌법의 가치 중 ‘평등’을 학습한다고 하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등과 관련된 가치갈등상황으로 제한해 준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갈등상황이란 학습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인터넷이나 뉴스거리에서 조사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구체적인 생활 속의 사례 중 평등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직접 수집,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실생활의 문제 즉,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례를 선정할 때에도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경험한 상황들을 그 예로써 수집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수학습방법에서 교사가 사례를 선정해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학생이 주도가 되어 사례를 수집해 오는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 사례를 수집·선정해 왔을 때의 제한점, 즉 성인의 언어, 사고 수준에서 바라보는 가치의 개념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고하고, 학습한 후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가치지를 내면화하기 쉽다.

2) 사례 범주화하기

전체 활동으로써 학생들이 각자 준비해 온 사례를 발표한다. 학생들이 수집해 온 사례들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범주화를 하는데, 유사한 사례끼리 묶어서 그 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요 어휘들을 구조화해 보는 활동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학습목표와 관련된 가치에 대한 갈등상황을 사례로써 수집해 온다고 해도 분명 이와 맞지 않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수집해 오는 경우가 있다. 교사는 마인드맵을 통한 사례 범주화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사례들은 추후에 학생들이 내린 개념 정의에서 비사례로 활용하여 개념 정립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범주화를 할 때 개념 간 구분이 모호한 부분에 관해서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어휘를 구조화하는 활동에서 의도한 용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교사는 발문을 통해서 적절한 어휘를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례 범주화하기 활동의 목적은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학생 수준의 어휘로 법의 가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개념 정의하기

마인드맵으로 범주화 활동을 한 후, 가치의 정의를 내리는 단계이다. 학생은 범주화 활동을 통해 학습 주제와 관련된 가치 개념을 여러 사례 속에서 사용된 용어를 가지고 개념 정의를 내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내린 정의가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아닐 경우 다른 여러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상황이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발문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내린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반대사례를 제시하여 기존 개념 정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학생들이 반대사례를 제시하여 개념 정의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개념 정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개별 사례분석 활동

개별 사례분석 활동은 학생이 자신이 준비해 온 사례가 개념 정의에 비추

어 보았을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를 분석해 보는 단계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헌법의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은 개념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개념을 수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등’을 학습할 경우,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의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면, 이것만으로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오개념 확인)하고, 일반적 정의에 비춘 ‘평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 변화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5) 모둠별 대표 사례선정 및 재구성 활동

개별 사례분석 활동을 통해 정리된 개별 사례에 대해 모둠별로 검토한다. 그 중에서 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학습 주제와 관련된 가치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재구성한 사례에 포함된 가치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지를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탐구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토의·토론 및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공통된 견해와 상반된 견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은 이 과정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해결방식을 끊임없이 반성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의·토론 및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6) 모둠별 결과 발표

개별 사례분석 활동과 모둠별 활동으로 도출된 탐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단계이다. 모둠별 활동에서 만들어진 재구성 사례를 모둠별로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가치갈등 상황에서 어떤 법적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모둠의 탐구결과 발표를 경청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 속에서 헌법적 가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7) 과정 및 결과 평가

마지막 단계로 학습과정과 최종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그리고 모둠원 간의 동료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발표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갖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둠별 사례와 그 사례의 분석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왜 그 가치가 소중한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성격을 인권보장적 관점과 민주시민교육적 관점,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면서 헌법적 가치 중심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행 초등 헌법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는 헌법교육의 방법에 주목하였다. 헌법교육 교수학습방법 중에 특히 사례기반학습에서 초등 헌법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기반학습의 수업모형들은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상당한 법적 기본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 있을 때 적용 가능한 모형들이었다. 이 수업모형들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본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학급의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다. 이에 6학년을 대상으로 헌법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초등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초등 헌법교육을 위한 사례기반학습 수업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V장에서 개발한 수업모형으로 다시 연구자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수업을 해 본 결과, 비록 한 학급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위한 사례기반

학습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미래에 유사한 가치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길러진 문제해결능력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하여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실현 가능한 이유는 학생들이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수집한 사례를 가지고 가치의 개념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고, 다른 학생들이 수집해 온 여러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보면서 문제의 해결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례기반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은 구체적인 생활 속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학습 전이력이 높은 초등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될 것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초등교육은 중등교육보다 교수학습방법 측면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 헌법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초등학교 교사용 사회과 지도서 6-2. 두산동아(주).
- 김민환, 추광재(2012).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수업 모형의 실제. 원미사.
- 김아영 외(2001). 교육심리학. 교육과학사.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제4권 1호.
- 박상준(2003).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 중심 토론 수업. 사회과교육. 제42권 2호.
- _____ (2013).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2호.
- 박성혁(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26권 1호.
- 박용조(2003). 사례연구법의 사회과 적용 과정 탐색. 한국사회과교육연구. 제42권 1호.
- 박형근(2009). 초등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이해와 실제. 초등학교 법교육 교사 위탁 연수 자료집. 법무부.
- 손민호(2005). 구성주의와 학습의 사회이론. 문음사.
- 연은경(2013). 사례기반학습을 위한 사례 설계 원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영택(2009). 사례기반학습에서의 사례구성방식과 추론활동 지원도구가 학습결과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제철(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37권 2호.
- _____ (2006). 사회과 법교육의 반성과 과제-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2호.
- 정상우(2013).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3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13. 6. 1.
- 허종렬 외(2009).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 American Bar Association(2003).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A Guide for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Chicago: ABA.
- Charles J. White III(1975).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 Chicago: ABA/YEFC
- Jerrold R. Coombs(1990). etc.. Ends in View -An Analysis of the Goals of Law-Related Education. Centre for the Study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 Center for Education, Law & Society Simon Fraser University : 78.
- June Tyler & David L. Manning(1981).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 The Connecticut State Board of Education.
- Mary C. Larkin(1998). Law In Your Life Teacher's Resource Binder. West Educational Publishing.
- Mcbee, Robin Haskeli(1994). Living the law by Laearning the Law. ERIC.

•• 연구 윤리 특강 ••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윤리와
학문 탐구**

[연구 윤리 특강]

학술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윤리와 학문 탐구

이 중 근(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I. 서론-연구기관의 윤리적 상황
 - II. 연구기관의 부패 행위
 - III. 연구행위에 관한 부정-표절행위
 - IV.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
 - V. 결어
- * 참고문헌

I. 서론 - 연구기관의 윤리적 상황

최근 우리 사회에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 횡령, 가짜학위 소지자의 횡행, 금전거래에 의한 연구비 배분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가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는 가치체계를 뒤흔들 만큼 만연해 있다. 물론 부패행위를 야기하는 주된 요소인 이기심이라는 것이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연구 윤리의 부패가 우리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부패행위에 가담할수록 연구기관은 빈약해진다. 이러한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는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연구기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학문적 생산성에도 커다란 역효과를 미친다. 에드먼드 버크의 "부패가 만연한 곳에는 자유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

연구윤리의 타락문제의 특징은 지리적인 경계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부패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칙이나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II. 연구기관의 부패행위

1. 연구윤리의 타락과의 구별

연구기관의 부패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모든 부패행위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드시 부패행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의 교수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연구가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한 부패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리적 보편성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인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였던 국가인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의 타락과 연구기관의 부패현상은 만연해 있다. 교육기관들이 그 운영과정에서 윤리적 원칙들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담한 부정행위들이 가끔씩 보도되고 있다.²⁾

1) Myroslava Antonowych & Oleksandr Merezhko, Corruption as a Problem in Ukraine's Scholarship and Education, in 11 The Fulbrighter in Ukraine 2 (Nov. 2006).

2) 예를 들면, 한 전직 대학총장이 학생을 위한 대부자금과 펠그란트(Pell grant) 장학금에서 340만 달러를 횡령하여 학교채무의 변제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 지역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이 회계부정으로 인가를 취소당하여 학교가 폐쇄되고 그 이사 중의 한 사람이 허위로 수업을 실시하였음을 위장하기 위해 유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일체의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되는 처벌을 받은 사건 및 3개의 주요 대학의 학생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이사들이 대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대부받을 것을 권유하여 많은 이득을 올린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 Andrea Jones, Ex-President of Morris Brown Gets Probation, Atlanta J.-Const., Jan. 4, 2007; Jonathan D. Glater, College Officers Profited by Sale of Lender Stock, N.Y. Times, Apr. 5, 2007 등 참조.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부패행위의 새로운 국면에 착안하여 산업부문과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재정적 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사실을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대학의 이상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산업부문에 의한 연구비 지원의 증가와 1980년의 「베이-돌법(Bayh-Dole Act)」에 의하여 정부자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특허취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연구의 상업화가 더욱 진행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³⁾ 기업이 지원한 연구자금으로 수행된 연구가 독립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3. 정치체제적 보편성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체제 못지않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부정입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부패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경대학의 지원서 양식에 학생모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들의 휴대폰 전화번호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成都 비즈니스 데일리誌는 이 대학 지원자들이 자기의 지원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뇌물을 제공하고픈 유혹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

대학이 입학허가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형식의 부패는 舊소련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소련붕괴 이후에도 실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⁵⁾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수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에

3) Harold Orlans, Potpourri, Change, May 1, 2004, at 6.

4) Peking University Admission Procedure Comes Under Fire, S. China Morning Post, June 11, 2003, at 7. 대학의 입학업무 관련자와의 친분 하에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하는 브로커에게 응분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5) Vera Rich, Law Shift Could Trap Dissenting Lecturers, Times Higher Educ. Supp., Aug. 4, 2006, at 10.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일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뇌물의 액수는 재학기간 5년 동안의 등록금의 합계 보다 많다고도 한다(College Cleanup Drive Begins, Moscow Times, July 12, 2004).

따라 학점이 결정된다고 하고,⁶⁾ 키르기즈스탄의 대학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대학이나 특정 교수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쉽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키르기즈스탄의 한 대학교수의 말에 의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면 차에 기름을 치면 되고, 기름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⁷⁾

Ⅲ. 연구행위에 관한 부정 — 표절행위

한국법과인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연구윤리규정은 제4조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이중 논문 게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하고,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나 특히, 연구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표절행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연구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수행한 선행 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오늘날은 연구논문이나 학문적 저작물에 오려붙일 자료가 인터넷에 널려 있는 관계로 표절행위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심각성이 훨씬 더해졌다. 일

6) Associated Press, 63 Cases of HIV in Children, Augusta Chron. (Ga.), Sept. 29, 2006, at A12.

7) Dina Tokbayeva, How to Become a Student?, Times Cent. Asia (Kyrg.), July 13, 2006.

8) http://www.khlea.org/menu_04_03.php(2014.10.26. 검색)

반적인 표절행위 이외에도 인터넷상으로 논문작성을 주문하여 구매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러한 형식의 학문적 사기는 단순한 실수나 인용에 관한 룰을 위반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이다.

표절행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표절자에게 학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표절행위가 폭로되는 경우에는 표절행위가 발생한 대학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무고한 교수나 학생들이 학문적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받게 되는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표절행위에 교육부문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표절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범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단어나 구절의 도용에만 표절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자료를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표절을 불허하는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 표절에 관한 개념 자체가 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⁹⁾ 또한 의도적인 표절행위와 전혀 고의성이 없는 표절행위 사이에는 무관심을 포괄하는 부주의(recklessness)를 책임요건으로 요구하는 중간지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윤리강령을 자세하게 입안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윤리헌장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⁰⁾ 더구나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표절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그것은 표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 온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대학이 외부의 조사를 자초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9) 표절행위에는 고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표절이란 귀속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말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소개에 대해서는, Kavita Kumar, SIU Spatting Over Plagiarism-Or is it Over Leadership?, St. Louis Post-Dispatch, Aug. 6, 2006 참조.

10) Vincent R. Johnson, Corruption in Education : A Global Legal Change, 48 SANTA CLARA L. REV. 1, 73-74 (2008)

IV.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윤리적 대응 방안

1. 윤리성 제고방안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은 제8조에서 연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검증체계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윤리적 원칙의 선언과 윤리적 지도력의 유지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주요 윤리적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원칙들이 연구기관 내부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때로는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보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나치게 사소한 것을 문제 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적 원칙의 선언과 더불어 윤리적 지도력의 유지가 필요하다. 윤리적 지도력을 대학 차원에서 보면, 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훌륭한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업주의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가들은 대학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 나머지 교수나 학생들의 표절행위나 부정행위를 변명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윤리적 지도력은 부패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3. 윤리강령의 제정과 엄격한 시행

윤리강령은 무엇이 금지되고 요구되는 가를 분명히 적시하고 문제가 된 위반 행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적법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윤리강령은 고의, 부주의, 과실 또는 무과실 등 어느 정도의 죄책에 대하여 처벌하는지와 그러한 죄책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의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죄책의 가능성이 명백하고 확실한(clear and convincing)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입증을 요하는지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의 규정에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조사나 판단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독립성과 보복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절차는 모두 지켜졌는지 또는 윤리강령은 정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재심절차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 원칙의 위반행위와 관행에 따른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리적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윤리적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관한 한 부패의 제로(零)화는 다른 영역에서도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연구부문에서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어떤 점에서는, 부정한 행위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과 관례들은 너무나 경직되고 성가실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규칙과 관례가 가져다 주는 혜택이 그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압도당하기도 한다. 일단 부패방지를 위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의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곳에서 결정되어야 한다.¹¹⁾ 따라서, 연구부문에서의 윤리적 체제의 실행은 윤리적 원칙의 완전한 실행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만큼만 실행하는 선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11)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S 52 (1999).

V. 결 어

어느 나라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기관은 부패행위와 투쟁해 왔고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학생, 교수나 연구자, 그리고 새로운 경영자는 그들의 선배나 선임자를 대체할 것이고, 또 인물 면에서의 이러한 교체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부패의 기회를 한층 더 확대재생산할 것이다. 특히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정행위의 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므로 연구윤리강령에서는 학문적 비행이 넓게 정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문헌]

(단행본)

SUSAN ROSE-ACKERMAN,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S 52 (1999).

(논문)

Myroslava Antonovych & Oleksandr Merezko, Corruption as a Problem in Ukraine's Scholarship and Education, in 11 The Fulbrighter in Ukraine (Nov. 2006).

Vincent R. Johnson, Corruption in Education : A Global Legal Change, 48 SANTA CLARA L. REV. 1 (2008).

(언론기사 기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윤리규정

(http://www.khlea.org/menu_04_03.php(2014.10.26. 검색)

Andrea Jones, Ex-President of Morris Brown Gets Probation, Atlanta J.-Const., Jan. 4, 2007.

Associated Press, 63 Cases of HIV in Children, Augusta Chron. (Ga.), Sept. 29, 2006.

Dina Tokbayeva, How to Become a Student?, Times Cent. Asia (Kyrg.), July 13, 2006.

Jonathan D. Glater, College Officers Profited by Sale of Lender Stock, N.Y. Times, Apr. 5, 2007.

Harold Orlans, Potpourri, Change, May 1, 2004.

Kavita Kumar, SIU Spatting Over Plagiarism-Or is it Over Leadership?, St. Louis Post-Dispatch, Aug. 6, 2006.

Peking University Admission Procedure Comes Under Fire, S. China Morning Post, June 11, 2003.

Vera Rich, Law Shift Could Trap Dissenting Lecturers, Times Higher Educ. Supp., Aug. 4, 2006.

통산 제1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헌법적 가치 존중을 위한 초등학교 헌법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4년 11월 1일 인쇄
2014년 11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박 인 현, 김 지 경
편집인 / 이 대 성, 조 진 우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